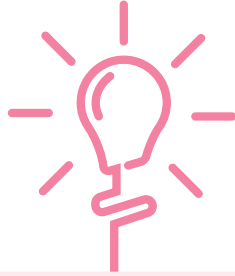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요

본 매뉴얼의 목적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통해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를 발견·신고하여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CONTENTS

I

아동학대의 예방 05

1장. 기본 전제 07

2장. 보육교사의 역할 11

3장. 원장의 역할 37

4장. 가정과의 협력 50

II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63

5장. 아동학대의 발견 65

6장. 아동학대 신고와 영유아 보호 77

III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85

7장. 부주의한 지도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87

8장.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경우 91

9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분석 101

부록

[부록 2-1]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108

[부록 2-2] 각 연령별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과 대처 방안 109

[부록 2-3] 발달이 늦은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제 111

[부록 2-4] 정신 웰빙 상태 검사 113

[부록 2-5] 우울 척도 평가 114

[부록 3-1] 아동학대 예방(금지) 서약서 115

[부록 3-2] 아동학대 예방 위한 원장 업무 셀프모니터링 116

[부록 4-1] 본 매뉴얼에서 사용된 ‘보호자’의 의미 117

[부록 6-1]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118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I

아동학대의 예방

1장. 기본 전제

2장. 보육교사의 역할

3장. 원장의 역할

4장. 가정과의 협력



Note

- »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존재한다.
- »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이미 보육행위에서의 실패(failure)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 단계에서 이를 적극 중재, 예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1장

기본 전제

1

아동학대의 예방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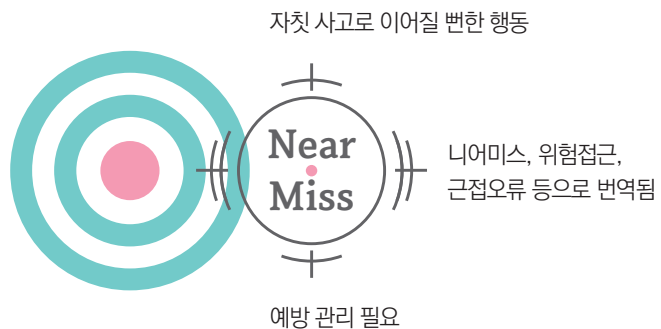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에서의 Near Miss

- 니어미스(Near Miss)란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종사자가 니어미스를 경험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행동이나 업무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어린이집에서 불의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육활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은 니어미스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관리될 필요가 있다.

원래는 사격이나 포격 등에서 포격에 가까운 화탄을 뜻하는 군사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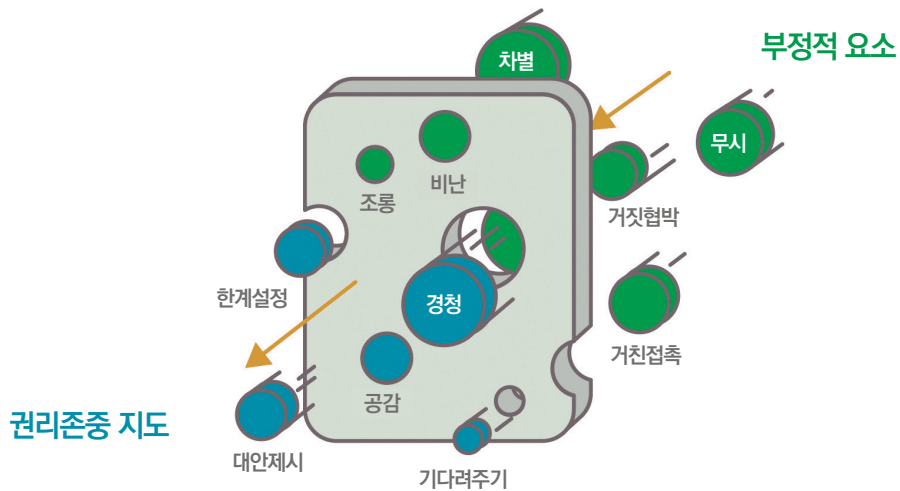
비행 중인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에 접근하여 공중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근접사고**를 말한다.

의료안전관리에서는 **발생으로 인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전에 발견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사건**을 뜻한다.



나. 아동학대에서의 니어미스

-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요소 대신 부정적 요소가 나타난 상태를 부주의한 지도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이 심지어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요소

- » 기다려주기
- »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를 경청하기
- »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
- »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한계 설정해주기
- » 영유아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영유아의 권리존중이 결여된 부정적 요소

- » 무시(영아가 계속 칭얼거리며 옷을 잡아당기는데 못 본 척함)
- » 비난(실수로 식판을 쏟았는데, “아휴!” 하며 혀를 차서 유아가 눈치를 봄)
- » 조롱(“잘~한다. 너 자꾸 그러다가 넘어질 줄 알았다.”)
- » 거짓협박(“교실로 들어가자! 꼴찌지? 너는 혼자 놀아 우리는 간대!”)
- » 차별(“너는 오늘 계속 땀 뺀 옷을 했으니, 선생님이 ○○이만 해 줄 거예요”)
- » 거친 접촉(팔을 부주의하게 잡아당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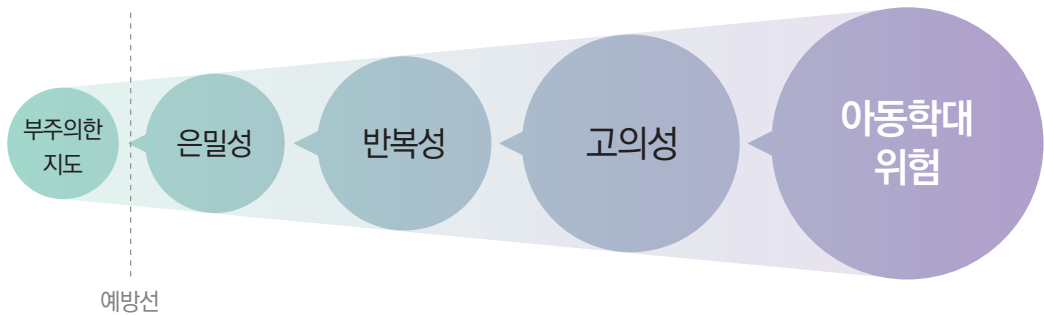
- 어린이집에서는 부주의한 지도의 특성이 나타날 때 이를 아동학대 사고의 니어미스라 인식하고, 즉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이나 업무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권리존중 보육이 일상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의 예방 원칙

가. 부주의한 지도를 인식하도록 예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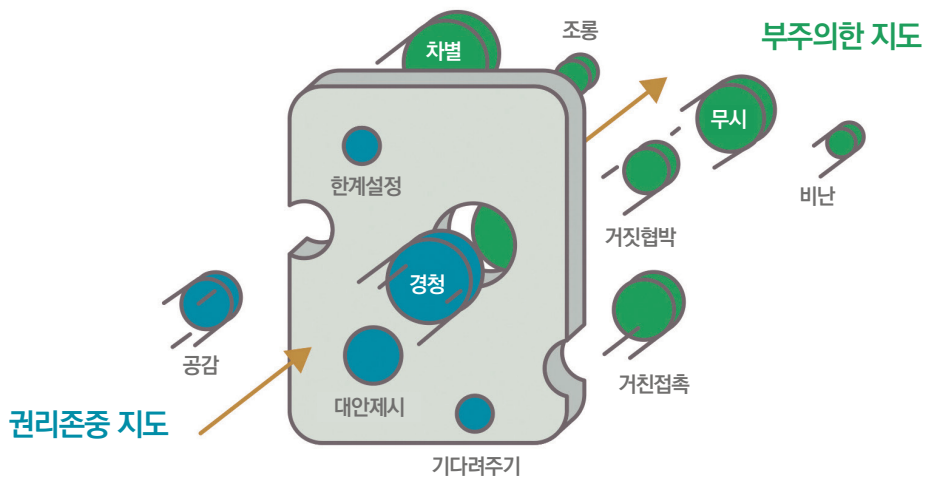
-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부주의한 지도 행위가 영유아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기경계가 흐려져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은밀성, 반복성, 고의성을 띄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보육일과를 모니터링하여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스스로에 의해 혹은 주변의 관찰에 의해 탐지되고 중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교사 연수, 보호자와의 협력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부주의한 지도가 아동학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적극 예방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의 기준(본 매뉴얼의 5장 참조)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그것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혹은 부주의한 지도였다고 호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권리존중 보육이 일상화되도록 관리

-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 행위를 중재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리는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행동의 부정적 요소를 들어내고, 대신 그곳에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 특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역할	원장의 역할	가정과의 협력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선을 인식하여 지도한다. » 부주의한 지도의 인식과 수정 » 영유아의 행동 이해와 수용 » 갈등요인 관리	니어미스(Near Miss) 수준에서 적극적인 중재·관리를 한다. » 채용 및 예방 교육 » 사례 장학과 상시 모니터링 » 어린이집 조직문화 조성	어린이집과 보호자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 보호자와 협력·소통 »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

2장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권리존중 보육을 한다.

1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면 부주의한 지도가 반복될 수 있고, 부주의한 지도는 자칫 아동학대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자가 진단¹⁾을 보육일과 전·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가. 등원

- 보호자와의 분리와 어린이집 생활의 시작인 등원지도의 사안과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호자와의 분리 불안 다루기** : 억지로 떼어놓지 말고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한다. 헤어지는 슬픔과 불안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관심을 갖는다.
 - **영유아의 건강과 기분 상태 파악하기** : 발열, 설사, 발진, 구토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짜증을 내며 울거나 기운 없이 앉아 있는지 살핀다.
 - **결석 사유 파악하기** : 보호자에게 원내 지침에 따라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한다. 파악이 된 경우 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파악이 안 된 경우도 보고하여 원장이 계속적으로 사유를 파악한다.

1) 부록 2-1 찾아보기

- 등원 시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0~1세) 등원 시, 영아가 엄마와 헤어진 후 울고 있음			
 부주의한 지도	• 이러면 안 되지? 울면 안 돼. 자꾸 울면 미운 사람 돼요. 그만 울어요. 뚝!	이유	• [무시] 분리불안에 대한 공감감이 없음 • [거짓협박] 비현실적 결과(~하면 ~된다)로 위협함 • [비존중] 영아의 필요나 요구를 존중하는 대안 제시가 결여됨
 권리존중 지도	• [정서공감] 사랑하는 우리 ○○. 이리 와요(영아를 안아준다). 우리 ○○이 엄마와 헤어지기가 힘들지?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엄마가 오실 거야. 선생님과 어떤 놀이할까? • [대안제시] ○○야,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 얼굴 찾아볼까? (가족사진이나 애착 물건을 보여주며) 엄마가 어디 계실까? 엄마 여기 있네.		

상황2 (3세) 등원하면서 갖고 온 팔찌를 보여주고 싶어 교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아, 선생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간식 챙기느라 정리하느라 바쁘잖아! • (영아의 팔찌를 빼앗아 사물함에 넣고 닫으며) 빨리 들어가 앉아. 집에서 물건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이유	• [무시] 영아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 • [거친 접촉] 영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빼앗음 • [비난] 영아의 관심과 행동에 대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반응하여 죄책감 갖게 함
 권리존중 지도	• [공감] 어서 와! ○○이가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선생님에게 팔찌 보여주고 싶었어? • [한계설정]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은 친구들도 맞이해야 하고 간식도 나눠주고 있어서 가방 있는 곳에 갈 수가 없는데 기다려줄래? • [대안제시] 잠깐만~ 친구들 맞이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간식 먹고 조금 후에 같이 보자. 기다려줘서 고마워.		

상황3 (4~5세) 자신의 가방, 옷, 수첩 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언제까지 정리할 거니? 친구들은 다했는데... • 지금까지 넌 뭐 했어? 넌 몇 살인데 아직도 도움이 필요해?	이유	• [무시] 도움이 필요한지 살피지 않음 • [비난] 또래와 비교하며 수치심을 줌 • [비존중] 기대 행동에 대한 안내와 설명 없음
 권리존중 지도	• [기다려주기] ○○아, 정리 중이니? 선생님이 도와줄 게 있을까? • [존중]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자. 선생님 친구들 옷 거는 것 도와주고 있을게! • [대안제시] 친구들이 ○○이와 블록놀이 하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네.		

나. 실내자유놀이

- 놀잇감을 선택하여 탐색하거나 또래와 놀이를 하는 자유놀이 시 유의점은 아래와 같다.
 - 또래와의 놀잇감 및 자료 공유 : 충분한 놀잇감(자료)의 종류와 개수를 제공한다.
 - 또래들의 놀이에 참여 : 또래 주변에서 병행놀이를 하면서 필요 역할을 찾도록 지원한다.
 - 놀이 규칙의 내면화 : 놀이 규칙을 협의해가며 반복하여 지도한다.
- 실내자유놀이 시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0~1세) 자기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친구가 와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영아의 손에서 놀잇감을 뺏으며) 이건 친구가 놀던 거잖아. 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니? • 친구가 울잖니?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이유	• [무시] 영아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 • [거친 접촉] 영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빼앗음 • [비존중] 영아의 필요나 요구에 대한 대안 제시 결여
 권리존중 지도	• [공감] □□아, ○○이가 만든 게 좋은가 보다! □□이도 그게 필요했구나. □□이가 네가 만든 것이 정말 멋있대. 같이 놀고 싶어 하네! • [경청] ○○이는 마음이 어땠어? ○○아, □□이도 너처럼 만들고 싶어. • [대안제시] ○○이랑 놀고 싶으면 '같이 놀자'라고 할까? • [한계설정] △△반 놀잇감은 △△반 친구들과 같이 사용해야 한단다. • [기다려주기] ○○아, 어떻게 하고 싶니?		

상황2	(3세) 친구들과 색종이 접기를 하면서 친구처럼 잘 되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보채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다른 친구들은 혼자서 잘만 하는데, 너 왜 못해? 몇 번을 해줘야 하니? • 어려우면 하지 마. 색종이만 계속 버리네. • 잘하는 □□이한테 해달라고 해. 그렇게 징징대면 안 해줄 거야!	이유	• [비존중] 유아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 • [비난] 기술 부족에 대해 수치감을 줌 • [조롱] 유아의 시도에 대해 죄책감을 줌 • [무시] 유아 요구 수용의 대안 제시 결여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아, 잘 안 되는구나. • [공감] 표정이 좋지 않네!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 [기다리기] 여기까지 어떻게 접은 거야? ○○이가 세모를 접었네. 그럼 어디부터 같이 접어볼까? • [대안제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만들까? 그래, 끝을 잡고서 위 끝에 맞춰볼까? 그렇지! 이제 딱 맞게 되었네! 아까 했던 것으로 다시 해볼까? 어때? 몇 개 더 만들어 볼까?		

상황3	(4~5세) 같은 자동차 모형을 서로 갖고 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자꾸 싸우면 동생 반 줘버릴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가져가 버린다! • 너! 다른 거 가지고 놀면 안 되지? 왜 니들은 꼭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럼 둘 다 못 놀게 할 거야!	이유	• [무시] 놀잇감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 • [거짓협박] 비현실적 결과(~하면 ~된다)로 위협함 • [비난] 요구 표현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함 • [비존중]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중재자 역할이 없음
 권리존중 지도	• [공감] (다투고 있다면 잠시 떨어지게 한 후) ○○이와 □□이, 둘이 싸워서 속상하구나? • [경청] 잠시만 선생님하고 이야기할까? (이야기를 들은 후) 서로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한계설정] 놀잇감은 하나인데 원하는 친구는 여럿일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가 약속을 정할 수도 있어! • [대안제시] (유아의 생각을 듣고)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는 어때? □□도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니? • [기다려주기] 그럼 ○○와 □□가 생각한 방법으로 놀이해보자. 이따 정리시간에 둘이서 재미있게 어떻게 놀았는지 이야기 들려줘.		

다. 실외활동(산책, 바깥놀이)

- 영유아들이 놀이터와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신체활동을 할 때 지도해야 할 사안과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실외 놀이기구의 공유** : 실외 놀이기구의 적정 인원 규모에 맞게 이용하며, 안전하면서도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놀잇감(풍선, 종이비행기, 제기 등)을 제공한다.
 - 안전한 전이와 이동** : 충분한 성인의 수를 확보하며, 영유아들은 짝을 정하여 이동한다. 이동 시에는 적절한 개인공간을 유지하되 모둠을 정하여 인원수를 수시로 파악한다.
 - 실외놀이 규칙의 준수** : 놀이 시작 전·후의 안전을 위한 놀이 규칙을 회상한다.
- 실외활동 시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2세) 바깥놀이 나가기 전에 옷(외투)을 입어야 한다고 했을 때 ‘싫어’라고 말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눈 맞춤 없이 외투에 영아의 팔을 끼우며) 얼른 옷 입으라고 했지? • 지금 외투를 안 입고 바깥놀이 가면 감기 걸린다. 왕주사 맞으러 병원가고 싶구나? • 외투 안 입을 거면 우리 먼저 나갈게. ○○이는 옷 입지 말고 교실에서 놀아.	이유	• [거친 접촉] 동의 구하지 않고 옷을 입힘 • [무시] 영아의 요구에 대한 공감 결여 • [거짓 협박] 영아가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차별] 집단에서 이탈 시킬 것을 예고
 권리존중 지도	• [공감] ○○아, 옷 입기 싫으니? • [경청] (영아의 이야기를 들은 후) 쌓기놀이 더 하고 싶어서 옷 입기 싫다고 한 거구나! • [한계설정] 지금 우리 다 같이 바깥놀이 할 시간이란다. 바깥 날씨가 어떤가 볼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봐~ 어때니? 겉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 콧물이 날 수도 있어. • [대안제시] 오후에 낮잠 자고 쌓기놀이 또 할 수 있어. 실외 놀이하면서 쌓기놀이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볼까? 바깥놀이 가서 오늘 무슨 놀이할까? • [기다려주기] ○○이가 바람이 못 들어오게 단추도 꼭꼭 잠가볼까?		

상황2 (4세) 견학 시, 교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보려고 혼자 이동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어디 봐? 앞 친구 보고 줄 맞춰서 가야지. • ○○야, 한 줄 기차 못하는 친구는 아기 반에 보낼까? • ○○이 짝이랑 손잡고 맨 끝으로 가! 제일 끝으로 가는 거야!	이유	• [무시] 유아의 요구 경청과 공감 결여 • [조롱] 유아에게 아기, 꼴찌 등의 말로 수치심을 줌 • [비난] 또래들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함
 권리존중 지도	• [공감] ○○이가 보고 싶은 것이 많구나? • [경청] 어떤 것이 더 보고 싶어? 무엇이 궁금하니? • [한계설정] 순서를 지키면 더 많이 안전하게 볼 수 있어. 다른 곳으로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단다. • [대안제시] △△반 친구들 천천히 가져! 더 보고 싶거나 궁금한 것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자! • [기다려주기] 천천히 봐도 된단다. 기다려줄게.		

상황3 (5세) 산책활동을 하던 중 넘어진 유아가 교사를 쳐다보며 울음을 터뜨릴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일으켜 세우며) 앞을 똑바로 잘 보고 다녀야지. 잘 안보고 가니까 넘어지잖아. • 다 큰 형님이 넘어지고 그래. • 울지 마! 울지 말고 말로 해!	이유	• [무시] 유아의 정서에 대한 공감 결여 • [비난] 유아 과실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함 • [조롱] 수치심을 갖게 함
 권리존중 지도	• [공감] 아이구 저런 ○○이 넘어졌구나. (양손을 잡아 일으켜주며) 어디 보자! 많이 다쳤니? (상처를 살피며) 피가 조금 나네! • [대안제시] 먼저 흙을 물로 씻자. 어린이집에 가서 반창고 붙이면 금방 나을 거야! • [한계설정] 어디에 걸려 넘어졌을까? 저기 땅이 움푹 들어갔네! 앞을 보고 천천히 조심히 걷자! 우리 모두 조심하자!		

라. 대·소집단 활동

- 활동의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함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전개한다. 일과 소개, 생일축하, 안전교육 등과 같이 영유아들이 반의 일원으로서 역할, 소속감과 협력 등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집단 활동 시 흔히 발생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독려하기** : 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특성에 따라 참여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유아의 사전 경험과 흥미가 관련된 내용과 발달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고, 활동의 목표를 유아들과 공유한다(“생일축하를 위해서 모였어요”).
 - **주의력 유지시키기** : 집단 활동 시 유아가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 유아의 주의 시간을 고려하여 활동 길이를 조정한다. 흥미가 사라지면 토레를 건드려 반응을 기다리는 장난을 하거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 **방해 행동 무시하기** : 우스꽝스러운 돌발행동으로 집단의 이목을 끌 경우 비난하지 않고 무시한다. ‘공동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역할을 주며 활동에 참여하게 돕는다.

- 대·소집단 활동 시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3세) '나비 동화'를 들려주는데 유아가 자신이 경험한 나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때		
 부주의한 지도	• 동화 다 읽고 난 뒤에 얘기하라고 몇 번 말했니? 왜 이렇게 못 기다리니? 쏘! • (다른 동료교사에게) 애가 눈치가 없어요~ • 지금 누가 이야기해야 하는 시간이니? 친구들 선생님 동화 읽어주는 소리 잘 들리나요?	이유	• [무시] 유아의 요구에 대한 경청과 공감 결여 • [비난] 유아가 죄책감을 갖게 함 • [조롱] 집단 전체가 보는 앞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비하함
 권리존중 지도	• [공감] ○○이가 부모님과 여행하며 본 '나비'를 얘기하고 싶었니? • [한계 설정] 지금 우리가 '나비 동화'를 듣고 있단다. • [대안 제시] 다 듣고 이야기를 할까? 나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친구들도 궁금해하네. (동화가 끝난 후) ○○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이 나비 이야기를 들어볼까?		

상황2	(4-5세) 안전교육 활동 시, 혼잣말로 노래를 반복해 부르고 우스운 소리로 장난처 방해를 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누구니? •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야? 이상한 노래 부르려면 밖에 나가서 해. 방해하지 말고. 장난 그만치고. • 너희들도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그만!	이유	• [무시] 유아의 요구 경청 결여 • [비난] 반 전체 친구들 앞에서 수치심을 갖게 함 • [조롱] 이상한 소리, 이상한 노래라고 비하함 • [거짓협박] '~하려면 ~하라'면서 보육실 밖으로 배제시키려고 위협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아,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갑자기 노래가 떠올랐어? • [공감] 재미있어서 자꾸 부르게 되지? • [한계설정] 지금은 친구들과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란다. ○○이가 이야기를 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어. • [대안제시] 교통안전 이야기 끝나고,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놀이할 때 해 줘도 될까?		

마. 정리정돈

- 정리정돈 지도 시 유의점은 아래와 같다.

- **하던 놀이를 마무리하기** : 놀이에 몰입을 할수록 정리시간이 되는 것을 아쉬워한다. 놀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왜 정리를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언급한다. 아쉬워하는 영유아의 요구를 존중하며 대안을 제시한다(“이 작품은 사진 찍어 뒀다가 벽에 붙여놓을까? 다음에 만들 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너희 생각은 어떠니?”).
- **놀잇감을 제자리에 넣기** : 놀잇감의 기능과 특성(크기, 모양, 색깔)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도록 한다. 정리 동기의 유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역할 정하기, 짝과 정리하기 등). “정리하자!”라는 포괄적인 지시보다는 “쌓기놀이 영역 벽돌블록 교구장에 넣자!”라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안내한다. 완벽한 정리정돈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이다. 정리정돈에 대한 참여하는 태도와 노력에 가치를 두고 격려한다.
- **자료와 작품을 정리하기** : 만들기를 하고 난 후, 다른 친구를 위해 남은 자료 정리와 자신의 작품 정리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준다.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정리정돈 시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2세) 친구들이 정리정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놀이하며 정리하지 않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너만 놀고 있어? • 놀잇감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놀잇감이 너를 미워할 거야. • 네가 놀이한 것은 바구니에 넣어야지. 뭐하고 있어? 제자리 정리 안하면 앞으로 놀이 못해.	이유	• [비난] 특정 유아를 가리켜 죄책감이 들게 함 • [무시] 요구 경청과 정서 공감의 결여 • [거짓협박] 비현실적인 인과 관계 (~하면 ~할 거야)로 공포감을 일으킴
 권리존중 지도	• [한계설정] ○○아, 지금은 정리시간이란다. 놀잇감 정리하고 맛있는 점심 먹자. • [대안제시]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하자! 이 놀잇감은 어디에 넣어야 하지? • [기다려주기] 그래~ ○○이가 제자리를 잘 알고 있네. 바구니에 담아 볼까? 와~ 우리 ○○이가 정리를 잘하는구나.		

상황2	(3세)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정리하지 않고 다른 색종이까지 더 꺼내려고 할 때		
 부주의한 지도	• 친구들은 다 정리하는데 너만 뭐하니? 왜 놀고 있는거야? • 우리 먼저 나간다. • 동생들도 정리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유	• [무시] 유아의 요구 경청과 공감의 결여 • [비난] 특정 유아가 죄책감을 갖게 함 • [거짓협박] 집단에서 소외시키겠다고 위협함 • [차별] 다른 유아들과 비교하여 비하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아, 종이접기를 더 하고 싶니? • [한계설정]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라네. 종이접기는 오후 놀이 시간에 할 수 있어. • [대안제시] (공을 보여주며) 우리 정리하고 공놀이 하러 바깥에 나가자. • [기다려주기] 우리 같이 정리하고 공놀이 하러 나가자!		

바. 급·간식

- 영유아들이 식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놀이 후의 적당한 공복감과 수용적인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식사 기술, 음식 선호의 차이와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따듯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미 급·간식 준비 시간부터 식사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식욕이 저하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 급·간식 시간의 지도 사안과 그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적당량 먹기** :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린 음식을 먹고 싶은 양만큼 먹되, 더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한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식욕이 저하되거나, 공복감을 채운 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할 때에는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 **골고루 먹기** : 식감과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여 음식에 대한 호감을 주고 골고루 먹어보도록 권하되, 이전의 부정적인 기억이 있는 음식, 낯선 음식 등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시에는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밥, 국, 반찬을 따로 담아 선호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다(한꺼번에 말아서 급하게 먹이는 것을 지양한다).
- **식사에 집중하기** : 친구와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으나 친구들의 식사 속도를 맞추도록 상호작용한다. 절대 서둘러 먹게 하려고 말을 못 하게 위협하거나, 식탁의자나 부스터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긴 시간 동안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식사기술 익히기** : 영유아들은 신체 조정 능력이 미숙하여 음식을 자주 흘리고 떨어뜨리거나 쏟을 수 있다. 음식을 줍기, 닦기, 옷에 묻은 음식을 떼기 등을 교사의 모델링과 설명으로 배우도록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실수 없이 성공하면 도전을 인정하고 격려해준다.
- **식사를 끝낸 영유아를 지원하기** : 식사를 먼저 마친 영유아는 잔반 처리와 식기구를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식당이 아닌 보육실에서 식사를 한 경우, 식사공간과 놀이 공간을 분리하고 식사를 하는 영유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급·간식의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0~1세) 점심시간에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자 손으로 먼저 먹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손을 잡으며 무서운 목소리로) 손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포크로 먹어야지. • 누가 지저분하게 손으로 먹어? (손바닥을 잡고 영아에게 보이며) 이거 손 묻은 거! 지지! 이 지지 어떻게 할 거야?	이유	• [거친 접촉] 식사 기술 미숙으로 손을 사용하여 먹을 때 물리적으로 제지함 • [무시] 경청과 공감에 결여됨 • [조롱] 또래들이 보는 상황에서 더럽게 된 것을 강조하여 위축되게 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아, 밥 맛있어? 두부 좋아해? • [공감] 선생님도 맛있다. 선생님도 두부 좋아해! • [한계설정] 그런데 우리 포크로 먹어볼까? 손으로 만지면 두부에 세균이 묻을 수 있어. • [대안제시] 선생님과 함께 포크를 사용해 보자! (포크를 든 영아의 손을 맞잡고) ○○가 좋아하는 두부를 포크로 꼭 찍어서 먹자 • [기다려주기] 포크로 먹어볼까?

상황2 (2세) 점심시간에 계속 옆 친구를 안거나 만지고, 두 팔로 기대어 엎드려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부주의한 지도	• (손으로 영아의 등을 밀며) 똑바로 앉아서 빨리 먹어야지. 앞으로 당겨 앉아요! 하나, 둘! 똑바로 앉아! □□ 좀 봐봐! 잘하지?	이유	• [거친 접촉] 영아의 사전 동의 없이 식사 중 몸 전체를 움직임 • [위협] 구령을 세며 반강제로 지시함 • [조롱] 또래와 비교하며 비하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교사가 옆에 앉으면서) ○○아, 밥 맛있어? • [한계설정] 우리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볼까? 친구에게 기대면 음식을 흘릴 수 있어. • [대안제시] 우리 ○○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있네. 책상 앞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 • [기다려주기] 와 ~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으니까 음식도 안 흘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네.

상황3 (3세) '고기' 등 특정 음식 위주로 먹고 '아채' 등은 전혀 먹지 않는 등 편식을 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이는 고기만 먹고 나물 반찬은 하나도 안 먹었네, 그러면서 맨날 고기 더 달라고 하니? • 여기 있는 채소 다 먹어야 고기 더 줄거야. •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는데~ 그렇지 애들아? • 다 먹은 친구들만 바깥놀이 나가자.	이유	• [무시] 개인적 요구에 대한 경청이 없음 • [비난] 유아의 행동에 대한 확증편향을 보임 ('맨날'을 언급하여 일반화함) • [비존중] 유아가 남겨질까 불안해 식욕이 저하됨 • [거짓협박] 유아의 요구와 상반된 지침을 강요함 • [차별] 정서적 공감과 선택적 대안제시 없음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이가 고기를 잘 먹는구나. 나물은 먹기 싫어? • [한계설정] 고기만 먹으면 응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아플 수 있어. 오늘은 나물 조금만 먹어볼까? • [기다려주기] 선생님이 먼저 먹어보고 얘기해 줄게. 와~ 고소하다. ○○이는 어떻게 할래? (조금 먹은 후) 와~ 우리 ○○이가 나물을 먹었네. 더 튼튼해지겠다.

사. 낮잠

- 영유아들은 여럿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자극으로 인해 피곤을 느낀다. 어릴수록 낮잠과 휴식은 오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 낮잠 시간에 교사들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들고 깨기** : 각자 편안한 수면 자세로 잠들 수 있도록 한다. 쾌적한 환경(온·습도, 조도, 소음)에서 누워서 쉬다가 천천히 잠들도록 한다. 잠을 재울 때나 깨울 때 부드러운 어조로 대한다. 공포감은 영유아를 오히려 각성시키므로 억지로 빨리 재우지 않는다.
 - 같은 시간대에 잠들고 일어나기** : 등원 시간에 따라 영유아들의 수면의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잠이 오지 않는 영유아들을 억지로 재우지 말아야 한다.
 - 잠 대신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 잠들기 어려워하는 영유아는 교사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개인 매트 위에서 쉬거나 조용한 혼자 놀이를 하도록 한다.
 - 수면의 안전을 살피기** : 잠시 잠깐 알람장을 적거나 업무를 볼 때라도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 영아의 경우 우유를 토하거나 이불에 얼굴이 덮여 산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사가 보육실을 비워서는 안 된다. 일찍 잠에서 깬 영유아가 보육교사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낮잠 시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0-1세) 낮잠 시간에 영아가 잠을 안자고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얼른 자야지! 경찰아저씨한테 ‘○○이 잡아 가세요’ 전화해야겠다! • (영아의 등을 힘주어 두드리며) 얼른 눈 감고 자요! 잠투정 하지 말고 얼른 자!	이유	• [무시]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거친 접촉] 토닥임에 힘이 들어감 • [거짓협박] 공포는 오히려 각성하게 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우리 ○○이 잠이 안 오나 보네. 친구들은 자려고 해요. 꿈속에서 만나야겠다. • [한계설정] 누워보자. 이불이랑 베개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선생님이 ○○이 곰돌이 이불 덮어줄게요. • [대안제시] 선생님이랑 낮잠 노래 들어보자. 어떤 낮잠 노래인가.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줄게.		

상황2	(2세) 낮잠에서 깨어 노래를 부르거나 옆에 자고 있는 친구를 만지고, 바닥을 쳐서 다른 친구 낮잠을 방해하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친구 잘 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 (매트를 밀어 이동시키며) 친구 건들지 마! 너 안 잘 거면 이불 정리해! • 원장 선생님, 여기에 자는 친구 방해하는 사람 있어요, 데리고 가세요!	이유	• [무시]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거친 접촉] 영아가 누운 매트를 밀어 이동시킴 • [거짓협박] 원장(원내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공포를 생기게 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이 일어났네! 잘 잤니? • [공감] 꿈꿨어? 기분이 어때?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누워있어도 돼. • [한계설정] 옆에 친구가 자는데 크게 이야기하거나 친구를 만지면 친구가 잠에서 깰 수도 있어. • [대안제시] 이쪽으로 와서 조용히 놀이 할까? 그래 조용한 놀이하자.		

상황3	(3세) 가장 마지막까지 눈을 뜨지 못하는 유아를 깨우려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유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으이구~ 안 자고 있다가 늦게 잠드니까 그렇지! • 깨울 때 안 일어나고 말이야! 일어나! 계속 자면 어떡해? 우리 오후 간식 먹으러 갈 거야! • 안 되겠다! ○○이는 옆 반 가서 자자! 일어나!	이유	• [거친 접촉]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강제로 몸을 일으키면 다칠 위험 있음 • [무시] 개인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비난] 늦게 잠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함 • [거짓 협박] 다른 반에 보내겠다고 위협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듬어 주며) ○○아, 계속 잠이 오니? • [한계설정] 일어날 시간이야. 선생님이 안아줄게. 지금 일어나서 오후 간식도 먹고, 친구들이랑 바깥놀이도 가자! • [기다려주기] (잠이 깬 것을 확인 한 후) 우리 ○○이 무슨 놀이 하고 싶어? 화장실에 가서 쉬할까?		

아. 배변(기저귀 같이)

- 영유아들의 섭식, 생리적 리듬과 당일의 기분 등에 따라 배변의 횟수, 시간, 양 등은 모두 차이가 있다. 동일 연령이라 하더라도 방광의 성숙 정도와 기질에 따른 배변의 상태와 처리 기술의 습득 훈련 정도의 개별적 차이를 존중한다. 영유아의 긍정적인 자아인식과 배변 기술을 익히도록 상호작용 시 유의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 **편안한 배변하도록 돕기** : 배변을 하면서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배변의 상태를 관찰하고 건강상의 문제 유무를 판단한다.
 - **쾌적하게 처리하기** : 배변 후 기저귀를 즉각적으로 갈아주고, 변기 사용 시 뒤통리에 충분한 도움을 주어 영유아가 상쾌함을 느끼도록 한다.
 - **실수 수용하기** : 영유아기의 배변 실수는 정상적인 일임을 인지한다. 엉덩이와 다리의 잔여물을 모두 깨끗이 씻기고, 젖은 옷은 행구어 비닐에 담아 가정에 보낸다.
 - **성인지 감수성 갖기** : 배변 처리를 할 때 성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 배변 시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와 권리존중 지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0-1세) 기저귀 같이 후 바로 배변을 한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어휴, 또 응가 했어? 왜 매번 기저귀 갈아주면 응가를 하는 거니? 정말 짜증난다. • (동료 교사들에게) 무슨 아가 똥 냄새가 이렇게 심해? • (영아들을 향해서) 애들아! 똥 냄새 나지? ○○가 똥 썼네!	이유	• [무시] 개인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조롱] 교사들끼리 영아를 놀림 • [비하] 친구들에게 놀리며 수치심을 갖게 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우리 ○○이가 선생님 손잡고 어디 가는 거지? • [공감] 아하~ 응가를 했네. 잘했어요. (눈을 맞추며) 우리 ○○이는 밥도 맛있게 잘 먹고 응가도 잘하니 쑥쑥 크겠다. • ○○이 물티슈 선생님 주세요! 자 이제 다 닦았어요. 자 이제 ○○이 허리 들어보세요. ○○이가 물티슈도 선생님한테 주고 허리도 들어주고. 고마워!		

상황2	(3세) 다른 영유아에 비해 배변 훈련이 늦어져 기저귀를 갈아주는 경우		
 부주의한 지도	• ○○아 언제까지 기저귀 찰 거야? 너는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커서 누가 보면 형님인 줄 아는데. • 친구들은 이제 다 팬티 입고, 우리 반에서 기저귀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 ○○이는 아가들 반에 가야겠다!	이유	• [무시] 개인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조롱] 수치심을 느끼게 함 • [차별] 비교하며 비하함 • [거짓협박] 다른 반에 보내겠다고 함
 권리존중 지도	• [경청] (손을 잡고 기저귀갈이 영역으로 가며) ○○이 기저귀 한번 보자. 기저귀 갈고 놀자! • [공감] (기저귀를 갈며) 아하! 우리 ○○이 쉬를 했네! 조금 쉬가 새었구나! 불편했겠네! • [대안제시] 화장실 가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기저귀 하고, 손 씻고 놀자! • [기다려주기] 자, 옷 갈아입고 기저귀도 갈았다. 이제 뭐하면 되지? 그렇지! 손 닦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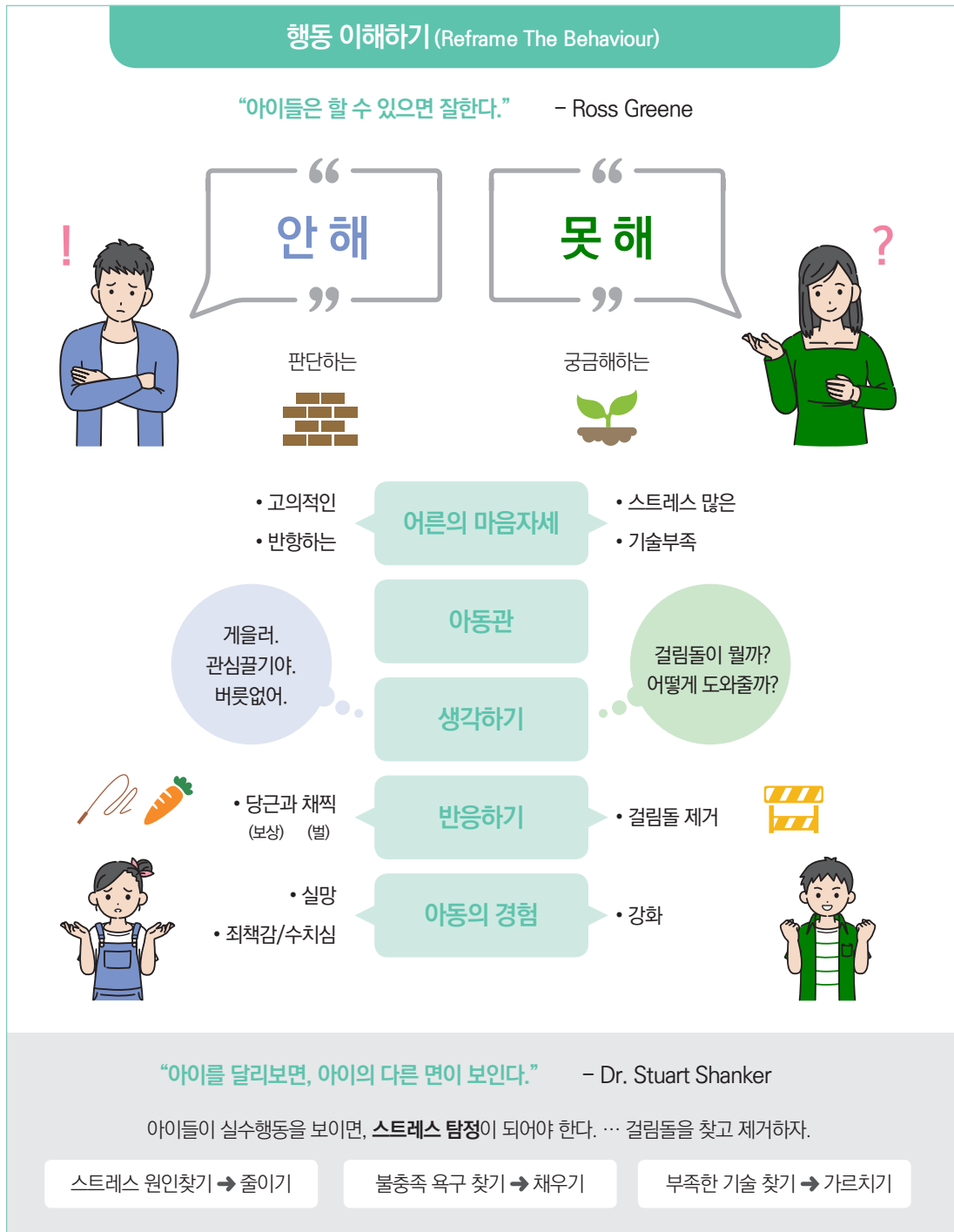
영유아를 수용하기

가. 영유아의 행동 이해

- 영유아들은 생물학적으로 동일 연령이어도 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 건강상태, 기질, 경험 및 관심사 등으로 인해 각자 발달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영유아가 어릴수록 신체운동능력의 미분화로 다치기 쉽고, 의사표현이 미숙하여 자주 울며, 인과관계 추론의 오류가 많아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 보육교사는 여러 영유아를 동시에 보육을 하면서 연령 적합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개별적 차이를 존중하며 일상생활, 놀이 및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²⁾
-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불안, 긴장, 스트레스, 충족되지 않은 욕구, 기술 부족 등을 파악하면 영유아의 정서와 행동의 수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2) 부록 2-2 참조



나. 귀인 오류 인식

- 귀인이란 사건의 발생에 대한 이유와 방법에 관한 추론 또는 지각을 말한다. 아동학대를 하는 어른은 ‘귀인(歸因, attribution)의 오류’를 갖기 쉽다*. “아이가 어른의 지시를 듣지 않고 반항”이 학대 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믿는 성향이 있다.

* 출처: 김상균(2005). 폭력의 심리학.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 행동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찾으며, 영유아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실수 행동(mistaken behavior)을 한다고 믿는다. 교사는 영유아의 실수 행동을 개별적인 요구 파악의 기회로 여기며, 영유아를 지지하면서 현재의 강점을 언급한다.
- 교사는 영유아의 실수 행동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힘겨루기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영유아의 행동에 대한 귀인 성향 점검하기

다음의 아이의 행동에 대한 A와 B 입장 둘 중에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1	아이가 등원할 때 울면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A. 교사를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B.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	아이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것은	A. 교사의 말을 유념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다.	
		B.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이다.	
3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겠다고 할 때	A. 시키는 대로 자려는 척을 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B. 낮잠을 자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이다.	
4	아이가 줄서지 않고 친구를 미는 것은	A. 교사가 옆에서 보고 있지 않아서이다.	
		B. 다른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5	아이가 자기 옷과 물건을 못 챙기는 것은	A. 나를 시종드는 사람으로 무시해서이다.	
		B.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6	아이가 까다롭게 굴면서 짜증을 내는 것은	A. 나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B. 고유한 기질 때문이다.	
7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A. 나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이다.	
		B.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이다.	
8	아이가 문제행동을 할 때에는	A. 교사의 권위 있는 칭찬, 벌, 타임아웃 등이 효과적이다.	
		B. 원인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9	동시에 여러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므로 아이들은	A. 예외 없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버릇을 들여야 한다.	
		B. 일과를 여유 있게 운영하여 갈등을 최소화 시킨다.	

* A 응답이 많을수록, 영유아의 행동이 교사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귀인 오류를 할 가능성이 높음.

3

갈등요인 줄이기

가. ‘멈추기’로 안전지대 확보

- 경청, 공감, 대안제시 및 긍정적 한계 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영유아가 이를 거부할 때 보육교사는 분노로 인한 아동학대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멈추기’를 한다. 이때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곁에서 머물면서 영유아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 안전지대에서의 ‘기다려주기’란 수용적인 태도로 영유아의 기분이 편안해지도록 영유아의 곁에 머물면서 공감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다그치거나, 혼자 있게 두고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사가 애정을 철회하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힘겨루기를 하거나, 타임아웃(time out)과 같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혼자 두면, 영유아가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는다고 느껴 정서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멈추기를 실행하게 된다면, 원장과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동료 보육교직원들과 영유아 지도방안에 대하여 사례 회의를 한다.
- 보육교사가 ‘부모 및 양육자에게 알리기’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원장은 해당 부모 및 양육자(보호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개별 상담을 한다. 보호자와 소통하며 어린이집에서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필요 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안내한다.

영유아와의 갈등 시 교사의 행동 요령

보육교사 행동 요령

〈일상 수준〉

보육교사의 지도와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가 다를 때

〈지나친 수준〉

보육교사는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영유아는 지도를 거부할 때(울음, 고집, 떼쓰기 등)

경청하고 공감하기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표정과 행위의 특성을 관찰하여 알아차린다.
- 보육교사는 자신이 관찰한 표정과 행위를 영유아의 감정과 연결하여 표현해준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행위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표현한 감정과 행위를 설명해 주어 다시 한 번 영유아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한다.

대안 및 한계 제시하기

-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도록 하거나, 2~3개 활동이나 놀이 또는 다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선택을 격려한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한계(공간, 시간, 놀잇감 유형 및 개수, 규칙 등)를 제시하여 활동이나 놀이의 허용 범위를 정한다.

멈추기

- 보육교사는 숨을 고르고, 진행 하던 지도(경청, 공감, 대안 및 한계 제시 등)를 멈춘다.
- 영유아의 곁에 머물며 영유아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 영유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

어린이집 행동 요령

보육교사 행동 요령 실행 상황이 지나친 수준일 때

원장과 부모 및 양육자에게 알리기

- 보육교사가 '멈추기'를 실행하였을 경우, 부모 및 양육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원장에게 보고한다.

보육교직원과 협의하기

- 보육교사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과 행동 요령 실행 과정의 경험을 나눈다.
 - '멈추기' 행동 요령 실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눈다.
 - 동료 보육교직원과 비슷한 경험을 나눈다.
 - 원장은 보육교사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수용하고 격려한다.

부모 및 양육자와 소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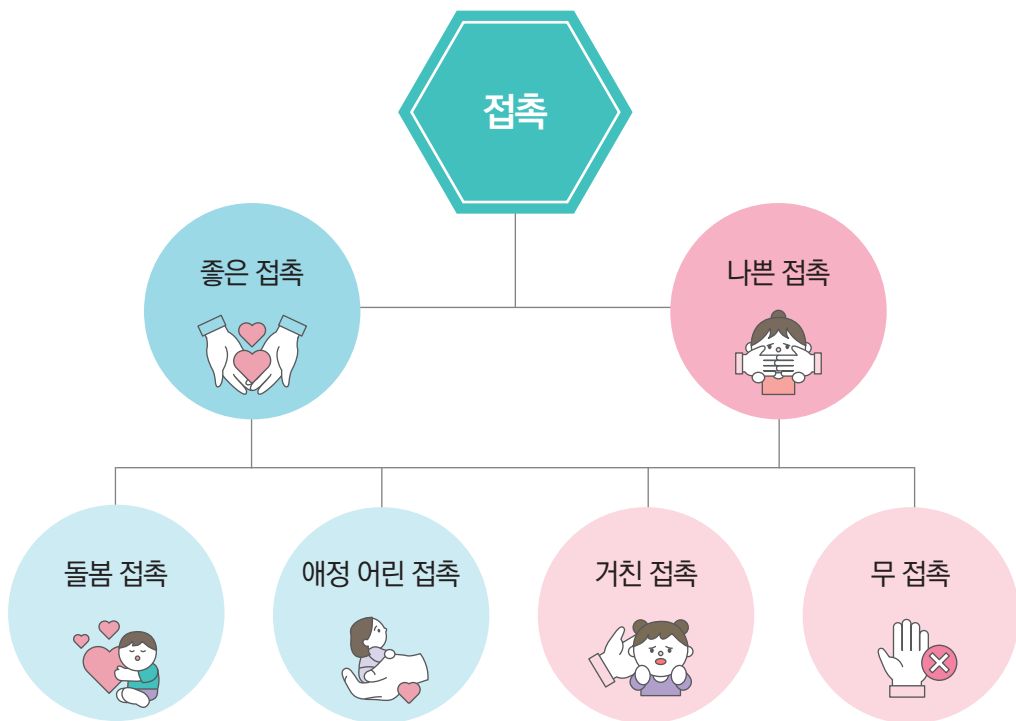
- 해당 보육교사가 '부모 및 양육자에게 알리기'를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원장은 해당 부모 및 양육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고, 개별 상담을 한다.
- 원장은 부모 및 양육자에게 '보육교사 행동 요령'과 '어린이집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빈번 발생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설명서.



신체 접촉은 언어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영유아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다. 영아들은 더 넘어지기 쉬워 가까이에서 잘 잡아주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에 휩싸여 있거나 안전이 염려될 때, 잡거나 안아주는 등의 접촉이 요구된다. 사랑의 접촉은 애착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아동학대 의심을 받게 될까 우려하여 접촉을 피하게 된다. 교사들의 무 접촉이나 거친 접촉은 자칫 방임이나 학대로 의심될 소지가 있다.



나. 발달이 늦은 영유아 지원

- 발달이 늦은 영유아는 또래관계를 맺거나 학습을 할 때 신체, 정서, 행동적인 문제 등을 보이며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이 늦은 영유아와 함께 지내면서 급박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종종 부주의한 상황이 촉발되어 아동학대로 확대되기도 한다.
- 발달이 늦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는 아래와 같다.
 - 또래 간 갈등이 잦음(신체발달 지연, 의사소통 기술 지연 등)
 - 주의가 지나치게 산만함(약속을 지키지 못함,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함)
 - 공격행동(충동적으로 물기, 밀기, 소리 지르기, 분노하며 물건 던지기 등)
 - 지나친 불안과 강박적인 행동(완강한 거부, 상동행동 반복, 극심한 불안으로 매달림, 떼쓰기 등)
 - 잠재적인 위기(환경과 생활사의 급변, 가족 갈등의 심화, 동생 출생, 이사, 질병 등의 위기)
- 발달이 늦은 영유아와 함께 지내며 행동관찰을 통해 행동 전의 원인과 행동의 후속 결과를 분석하여 가설을 정하도록 한다. 문제행동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아래와 같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도록 한다.³⁾
-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 인력지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지원치료 서비스를 위해 치료사 배치, 보조인력 지원, 동료 교사와의 협력 체계 마련(역할분배)이 요구됨
 - 검사지원 : 선별검사, 발달검사 등의 인력, 비용 지원
 - 시설 환경지원 : 안전장치, 시설 개보수, 특수 제작된 학습 자료와 교구
 - 교육지원 : 영유아 발달의 스펙트럼과 긍정적 행동 지원 교육
 - 노력에 비해 영유아의 변화 속도가 느려 보육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이 요구됨
-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경우 가정과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야 한다. 보호자(부모)와의 상담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기관 및 연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3) 부록 2-3 참조

다.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

- 보육교사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소홀은 부주의한 지도의 가능성을 높인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인 정신건강 관리로 안녕감을 유지해야 한다.
-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한다.
 - 지속적인 감정부조화로 정신적 소외감, 감정마비, 소진을 경험할 때
 - 과다한 업무로 시간 부족을 느낄 때
 - 직무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성 부족을 느낄 때
 - 업무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조정이 불가하다고 느낄 때
 - 업무 여건과 환경이 불안정할 때
 - 동료와의 갈등관계에 있을 때
 - 영유아의 보호자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 분노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훈련을 평소에 실천한다.

- 멈추기

- ① 복식호흡을 10회 하기
- ② 잠시 창문 밖을 보며 물을 마시기
- ③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의 긴장을 풀기

- 생각하기

- ① 원인과 책임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유보하기
- ② 현재 가능한 해결 지향적 방법 찾기

- 도움 구하기

- ① 급박한 상황 시 원장과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순환하기 위해 사고하는 습관을 가진다.
 - 상황이 어렵다는 생각을 차단하고 현재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료와 함께한다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기
 - 자신이 현재 느끼는 소소한 감사와 즐거움에 대해 표현하기
 - 자신이 노력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나누기
 -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나누기
-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 점검을 하고 필요시 도움을 구한다.
 - 자기이해 테스트(한국보육진흥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정신적 웰빙상태 검사⁴⁾, 우울감 진단 검사⁴⁾를 실시
해보고 수치를 확인 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 교사 회의나 면담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업무 재조정을 요청하기
 - 취미생활, 가벼운 산책, 운동, 명상 등 개인적인 충전시간을 가지기

마음성장 프로젝트 : 스트레스를 포함한 자기이해 테스트

✓ 자기이해 테스트는 총 5개 영역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교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자존감, 소명감, 정서능력,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에 대해 자기진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존감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보는지(유능성),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심리적 건강),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다고 믿는지(자아존중) 등 3가지 측면을 11개 문항으로 측정합니다.

소명감

소명감은 보육교직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노력, 직무 만족감 등 3가지 측면을 7개 문항으로 측정합니다.

정서능력

정서능력은 정서에 대한 인식능력,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 2가지 측면을 6개 문항으로 측정합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사회성(사교성), 의사소통, 타인존중 및 배려, 공감능력 등 4가지 측면을 6개 문항으로 측정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다루었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지각, 부정적 지각 등 2가지 측면을 10개 문항으로 측정합니다. ※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인용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mindup.kcpi.or.kr>).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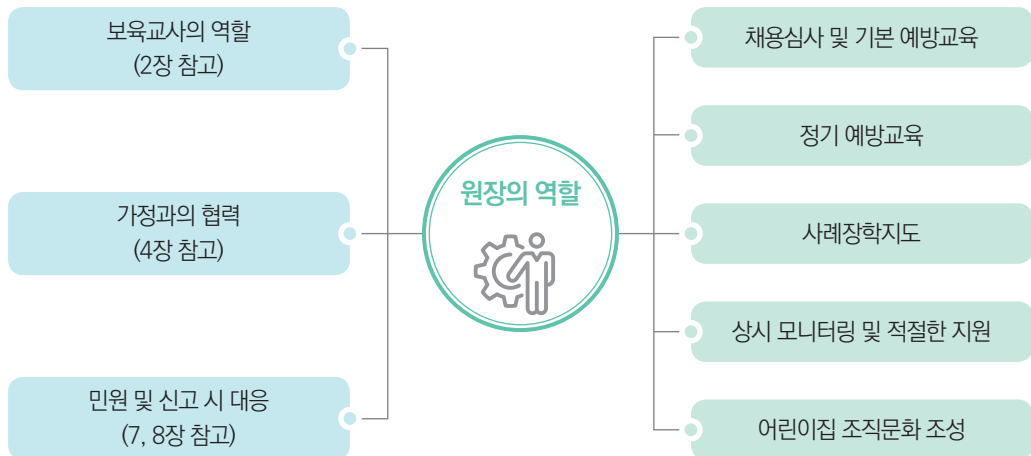
원장의 역할

니어미스(Near Miss) 수준에서의 적극적 중재·관리로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1차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원장은 평소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원장이 ‘주의와 감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1

채용심사 및 기본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의심)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원장은 채용 시 면접 및 서류를 통해 지원자의 현장적응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다.
 - 법적 결격 여부 확인(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 영유아 이해 및 현장 적응 능력, 인·적성 및 자기관리 능력

※ 채용 심사 시 ‘영유아 이해 및 현장 적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활용해보세요.

-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신체적 상흔, 무단결석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모가 부주의한 지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2021). 2021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서 일부 내용 참고.

- 보육교직원의 채용이 확정된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제공한다.
 -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 권리존중 보육 및 아동학대 행동의 양상
 - 부주의한 지도 및 아동학대 행위 관련 민원 발생 이후 대응과정
- 원장은 기본 예방교육 실시 후 교육 내용(일시, 참여자, 자료 등)을 기록으로 남기며, 보육교직원에게 요청하여 ‘아동학대 예방(금지) 서약서’⁵⁾를 작성한 뒤 보관한다.

5) 부록 3-1 참조

2

정기 예방교육

-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법적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원장은 예방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의심)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교육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일방적 교육보다는 보육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보육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과 방법의 예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	교육방법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법적 의무교육, 각 연1회)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학대사례 및 발생 원인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요청 사유 및 절차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의 중요성과 실제 • 아동권리존중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 점검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 자율장학⁶⁾ • 온라인 교육 • 전문가 초빙 • 외부 교육 참여(지역연합회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고자료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영상(www.ncrc.go.kr).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6)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9).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2 참고.

- 원장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를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보육교직원 간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행동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나요?			
※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해 보세요.			
* 보육 중에 아래의 부주의한 지도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었나요?		예	아니오
무시	1.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들은 척 함 (예: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예: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있는데 선생님을 부를 때까지 돕지 않음)		
	3.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예: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비난	4.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를 갖게 함 (예: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5.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예: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까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6.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예: “이거 누가 흘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조롱	7.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예: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대!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8.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예: “친구들은 혼자 잘 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9.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예: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거짓 협박	1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예: “놀잇감 가지고 한 번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11.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예: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12.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결을 예고함 (예: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차별	13.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예: “선생님! 애 좀 달래 봐요! 애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14.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예: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찰래? 기저귀 찬 친구는 별로야.”)		
	15.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예: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거친 접촉	16.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예: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17.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함 (예: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발로 밟고 밀며 이동시킴)		
	18.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예: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확 잡음)		

3

사례 장학지도

- 원장은 사례 장학지도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개별성을 이해하고, 일과 상황별로 적절한 지도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사례 장학은 교사교육이나 회의 시간 등을 활용하며,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전체 교사, 영아반/유아반 교사, 연령별 교사 등으로 집단을 다양하게 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 원장은 보육교사 1인당 학기별 1회 정도 ‘영유아의 개별성’ 혹은 ‘일과 상황’에 기초한 지도전략에 대해 각 반 사례와 개선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 사례 장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식사, 낮잠, 화장실, 집단 활동 등 아동학대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주의한 행동과 대처방안
 - 문제행동이나 또래 갈등관계에 대한 적절한 중재방법
 - 연령별 영유아의 특성 및 기질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
- 원장은 사례 장학을 통해 각반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보육교직원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을 위한 행동목록과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 원장은 개별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과시간 중 영유아 및 학부모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가정과 협력적 관계를 마련한다.

A어린이집 사례

상황별 지도전략에 대한 논의

- 어린이집에서는 식사시간 식당을 이용하는데, 마지막 1명이 남은 경우 담임교사가 남은 영유아를 조리원 선생님께 맡기고 교실로 이동하다 보니, 영유아 혼자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담임교사가 교실에 있는 영유아들의 양치지도를 위해 마지막까지 식당에 함께 있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식사시간 마지막 남은 2명 중 1명이 다 먹으면 2명 모두 함께 교실로 이동한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해 학급 부모님들께도 내용을 전달 드려 협조를 부탁드렸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식사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B어린이집 사례

개별성(영유아 특성 및 기질)에 따른 지도전략 논의

- 대상 : ○○○(만1세)
- 특성과 기질 : 접근성이 높고 조절력은 낮은 기질로 활동적이며 새로운 것 탐색을 좋아하고 주의 집중력이 낮은 편이다.
- 상황 : ○○이는 오르고 내리기, 뛰기와 구르기와 같은 대근육 활동을 좋아해 도움 없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교실에서 교구장, 책꽂이, 책상 등에 올라가는 상황이 하루에 5~6번씩 나타난다.
- 바람직한 지도 :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었구나~” (공감) → 바닥으로 내려주기 → “교구장에 올라가면 위험해요.” (행동 제한) → “쿵 떨어지면 머리가 다칠 수 있어요.” (이유 설명) →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으면 여기 오름대에 올라가자” (대안놀이 안내)
- 부주의한 지도 : “(단호한 목소리와 무표정으로) 안 돼요!”, “여기 올라가면 위험해!”, “○○이 내려오세요.”, “떨어지면 아야 하지!”
- 논의점 : 교구장에 올라간 ○○이를 보고 동료교사인 A선생님이 “○○이~ 여기 올라가고 싶었어!”라며 안아서 내려주었는데 저는 안전과 관련된 행동에서는 영아에게 “높은 교구장에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라고 제한 행동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예방과 아동존중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 우리 어린이집 지도전략
 - 각 반 경력교사가 위험 행동 여부를 판단, 담임교사 간 동일한 기준 정하기
 - 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하면 안 돼!”, “○○아, 때리면 안 돼!” 등의 제한 행동을 먼저 지도할 수 있음. 이후 이유 설명, 공감, 대안 등을 지도함
 - 위험한 행동은 연령별, 원아별로 다르게 최소한으로 규정, 위험한 행동이라 판단해 행동 제한을 많이 할수록 모험 놀이와 탐색 활동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교사의 관리 능력을 올리고 제한 행동은 최소화하기

4 상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지원

- 원장은 어린이집의 일과 내에서 정기적, 비정기적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권리존중 보육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에서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보육교직원의 권리존중 보육(상호작용)
 - 환경 요인(보육환경과 근무환경)
 -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 원장은 모니터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보육교직원에게 모니터링의 목적과 내용을 미리 공지한다.
- 원장은 모니터링에서 관찰된 의미 있는 내용이나 보육교직원에게 전달한 내용, 반별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운영일지나 메모 등으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 상시 모니터링 점검 내용 및 적절한 지원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상	점검 내용	적절한 지원 예시	참고자료
보육교직원 (교사)	• 권리존중 보육(상호작용)	• 격려와 지원, 모델링 • 일과운영 시간 조정 • 개별 면담 통한 지원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환경 및 근무환경	• 시설설비, 놀잇감 • 위생, 안전	• 위험요인 제거 및 청소 • 필요시 시설 개보수 • 놀이환경 개선 지원	환경 점검표
	• 근무시간 • 교사 대 아동비율	• 근무시간표 및 일정조정 • 대체인력 지원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여부	• 보조교사 추가 지원 • 가정과 긴밀한 소통	보육일지 관찰일지

가. 보육교직원

- 원장은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2장과 연계)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부주의한 지도나 아동학대(의심)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민감하게 관찰한다.
- 보육교직원 모니터링에서 특이사항 없이 권리존중 보육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경우, 원장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보육교직원을 격려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내 권리존중 보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동료교사에게 바람직한 실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 모니터링에서 부주의한 지도를 목격한 경우, 원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우선 당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말하고 행동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과 가능한 빨리(즉시)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을 통해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과 해당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 행동 및 실천 계획을 함께 모색한다.
- 이후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반복적인 관찰과 피드백 제공에도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객관적인 관찰 정보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 만약 보육교직원 모니터링 중 아동학대(의심) 행동을 목격하게 된다면, 원장은 즉각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영유아와 분리시킨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 및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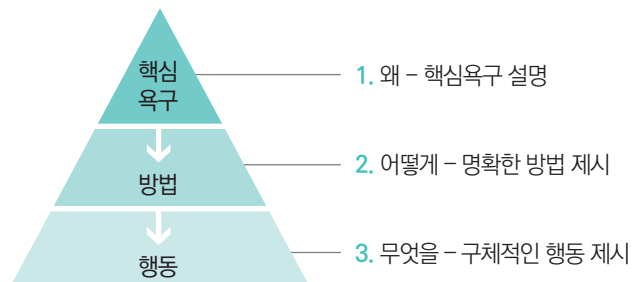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원장은 명확하고 부드러운 지시를 통해 교사의 문제행동이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 출처: 박재연(2016).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부주의한 지도나 아동학대(의심) 행동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시, 비난, 은폐, 축소하기보다는 정해진 기준과 지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영향을 준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원장은 어린이집 실정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⁷⁾을 작성하며, 교사나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원장은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해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 저장일수, 영상장치 성능 등 기계적인 이상과 더불어 부주의한 지도 및 아동학대(의심)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직접 모니터링 및 교사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대체 행동 및 실천 계획을 함께 모색한다.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강구할 수 있다.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5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중 5) 설치·운영 점검 등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한 교실에 2인 이상의 교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유의점

- 아동학대 예방의 입장에서는 교사 혼자 영유아를 돌보는 상황보다는 한 교실에 2인 이상의 교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서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하지만 한 교실에 2인 이상의 교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동료 교사 간 사적 대화가 잦은 경우 영유아를 방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다 보니 교사는 동료교사와의 대화를 선호하기 쉽고,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 원장은 학급 배정 시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급별 운영규칙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p190 참고.

나. 보육환경 및 근무환경

- 원장은 모니터링에서 실내외 공간이나 설비 등 보육환경에서 아동학대(의심)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점검한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한다.
- 부적절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또한 아동학대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휴게시간 사용 등 근무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점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보육환경 및 근무환경 모니터링 시 점검사항과 가능한 조치	
실내외 공간에 사각지대가 있는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장애물 치우거나 CCTV 추가
외부에서 교실을 수시로 관찰하기 수월한가?	창 높이 조절 등으로 교실의 개방성 확보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은 위생적이고 안전한가?	청소 및 위험요인 제거
가구나 설비, 놀잇감이 영유아 사용에 불편하지 않는가?	신체크기에 적합하게 조정하거나 깨지고 파손된 물건을 바로 수리하거나 당장 수리가 어려우면 성인 공간에 치워두기
놀잇감 수량은 부족하지 않은가? 놀이공간이 좁아서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는 않는가?	또래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놀잇감은 충분하게, 놀이공간은 여유있게 제공
영유아의 주도적 놀이를 유도하는 도전적인 놀잇감이 구비되어 있는가?	영유아가 배회하지 않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도전적인 놀잇감을 제공
일과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이 충족된 상황인가?	보조교사 배치 혹은 대체인력 지원
교사는 적정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휴게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가?	휴게시간 조정 및 안락한 물리적 공간 마련
특정 교사에게만 업무가 과중되고 있지는 않는가?	교사회의를 통한 업무분장 조정

다.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발달지연, 일과 부적응, 문제행동 등으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영유아가 있는 경우 원장은 담임교사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보조교사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원장은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와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공유한다. 더불어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의 지도 방향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원장은 직접적인 영유아 모니터링 외에 보육일지나 관찰기록 등 교사가 작성한 문서를 통해서도 영유아의 개별 특성이나 지원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 원장은 수시로 보육일지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 면담을 통해 영유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원장의 아동학대 예방관리에 대한 셀프모니터링⁸⁾

원장은 자신의 아동학대 예방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셀프모니터링 할 수 있다.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하여 가정과 신뢰로운 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문제 상황 발생 시 원장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영유아 권리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 출처: 서울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자기체크리스트.

8) 부록 3-2 참고

5

어린이집 조직문화 조성

-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규정을 대체하여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데 영향을 준다.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원장은 기관의 비전과 가치가 반영된 운영방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육교직원과 공유함으로써 업무수행 절차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장은 교사회의 시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처리 과정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한다.
- 한편, 존중, 배려, 경청 등 정서적 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와 조직 내 협업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과 사례 장학지도, 보육일지 검토 등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원장은 필요한 경우 초보 교사와 경력 교사 간 멘토링 관계를 통해 업무수행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장은 처우나 복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업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권리존중 보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원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조직문화 관리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장

가정과의 협력

어린이집과 보호자가 영유아 보호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 01 보호자와 협력·소통**
- 보호자와 영유아의 일과 공유
 - 어린이집 공간·생활 개방
 - 어린이집 운영내용 안내
 - 가족 참여 활동

- 02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개선 지원
 - 상담을 통한 훈육 지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지원
 -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위한 지원

- 니어미스(Near Miss) 수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보호자가 상호 협력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보호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높여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가정에서도 영유아에 대해 부주의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부모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보호자의 자녀지도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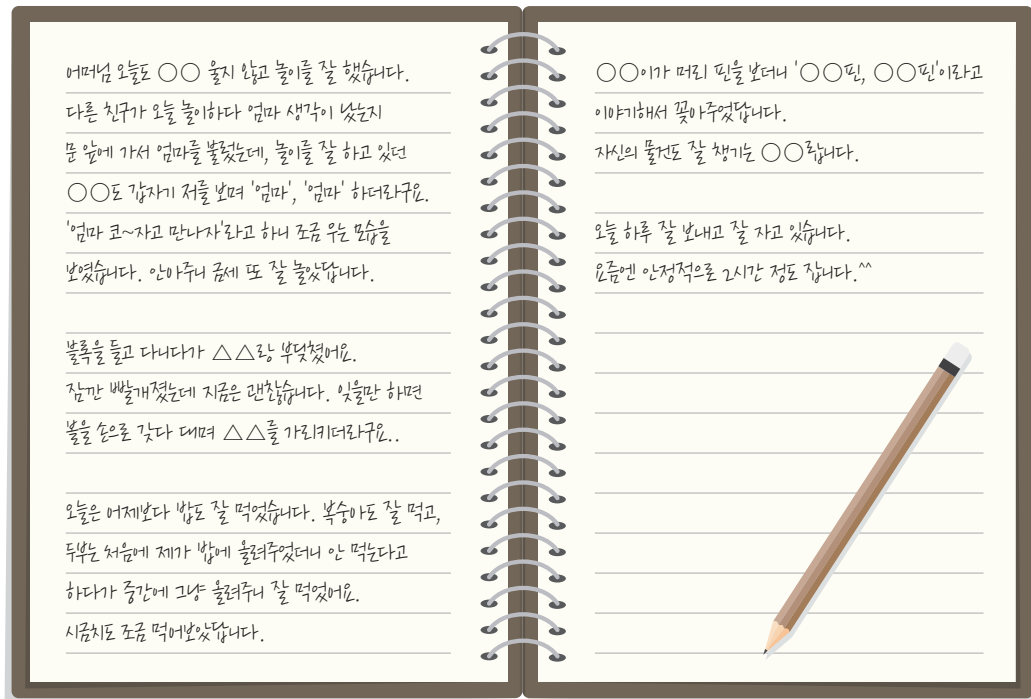
보호자⁹⁾와 협력·소통

가. 보호자와 영유아의 일과 공유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일과의 대체적인 생활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되,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중요한 사안 : 새로운 관심이나 흥미, 즐거워한 경험들, 또래 간 갈등상황, 안전사고, 건강상의 이상 징후 등
 -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대면 접촉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여 보호자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세히 알리도록 한다.
 - 가령, 영유아가 등원할 때 자주 울고, 보호자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또래와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경우,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불안해할 때는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더 상세히 안내할 수 있다.

알림장 예시

등원 시 헤어지기 어려워하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일과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면, 가정에서도 영유아의 경험을 이해하고 일관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사진, 노래와 즐거웠던 일화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
 - 보호자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교사에게 안내(예: 지난 주말의 재미있던 장면, 우리 집 베스트 메뉴 소개, 우리만 아는 ○○이의 비밀 등)
- 일과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영유아의 상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응급처치를 한다. 일과 중 영유아의 상태를 살피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가정에서도 영유아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
 - ‘이 정도는 별일 아니니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태도, ‘이야기해서 일이 커지면 어쩌지?’하는 불안감에 영유아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놓칠 수 있다. 영유아에게 발생한 일이 사소하다고 무심히 넘기는 태도는 보호자의 오해를 초래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만 3세반 유아가 블록으로 미끄럼틀을 구성하여 놀이하다 엉덩방아를 찧음. 교사는 상처를 확인하지 않고 엉덩이를 문질러준 후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음



조모의 대리양육으로 엄마는 4-5일 뒤 주말에 유아를 목욕 시키다가 허리 상처를 발견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저하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불필요한 흉터가 생김

만 4세반 유아가 실외놀이터에서 놀다 넘어지며, 머리가 땅에 부딪힘. 하원할 때까지 아이에게 별다른 증세가 없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



며칠 뒤 유아가 구토증세 보임. 가벼운 뇌진탕 확인 받음



영유아의 건강 위협
의도하지 않았으나 교사의 방임으로 판단될 수 있음

만 3세반 유아가 낮잠시간 자면서 오줌을 쌌. 교사가 뒤늦게 발견하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으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음



젖은 옷을 입고 오랜 시간 있었던 탓에 유아가 며칠 동안 고열이 남
부모가 자녀와 다른 교사를 통해 뒤늦게 이유를 확인함



보호자의 오해 유발
의도하지 않았으나 교사의 방임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보호자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경우 유선이나 스마트알림장 등을 통해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보호자가 고지하지 않은 결석 유아가 있을 경우 교사는 당일 중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도록 한다.

나. 어린이집 공간·생활 개방

- 어린이집의 공간과 생활을 개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첫째, 보호자가 어린이집 상황을 자주 관찰하면서 집단 보육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어려움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둘째, 보호자가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육교직원이 자각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니어미스(Near Miss) 상황이 감소될 수 있다.
 - 셋째,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고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
- 원장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공간과 생활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어린이집 공간 및 생활 개방을 위한 고려할 사항
 - ① 보호자는 어린이집 공간 중 어디까지 보호자의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예: 보육실 안까지 허용 vs 보육실 밖만 허용)
 - ②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언제 출입하도록 할 것인가?
(예: 등하원 시에만 가능 vs 부모가 원할 때 수시로 가능)
 - ③ 보호자가 어린이집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
(예: 영유아가 보호자를 보지 않도록 조심히 살펴보기, 보호자끼리 큰소리로 말하지 않기 등)
 - 영유아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감염병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가 부담 없이 어린이집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참여 활동을 어린이집 개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어린이집 운영내용 안내

- 원장은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운영현황 및 원칙, 보육계획 및 실행 내용
 -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 교직원 배치 및 변동
 - 식단, 행사 등
- 어린이집 운영내용은 다양한 방법 및 경로를 활용하여 알린다.
 - 가정통신문(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종이 인쇄물 등)
 - 웹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 어린이집 내 게시판
 -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및 보호자 교육 등
- 어린이집 운영 내용에 대해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알림장, 무기명 건의함, 웹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은 한 번에 다수의 부모와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때 원장은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운영현황 및 원칙, 보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여 보호자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급·간식 지도 및 낮잠시간 운영에 대한 어린이집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추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편안한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리엔테이션 참여 경험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보호자와 보호자가 서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가족 참여 활동

-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다양한 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보호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가족 참여 활동을 통해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영유아의 일과 이해, 어린이집 맥락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신뢰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가족 참여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보호자가 개인 일정을 조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인다.
- 보호자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참여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예를 들어, 텃밭 활동, 급식 참여, 바자회 활동, 견학도우미, 교통안전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직업소개 및 체험, 그림책 읽어주기 등 활동 가능한 다양한 안을 마련함으로써, 대부분의 보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자 참여 활동 예시

 텃밭활동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화단과 텃밭을 이용해 자녀와 함께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심기를 하면서 식물 가꾸는 경험을 공유한다.
 급식참여	부모가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급식을 경험함으로써, 부모는 영유아의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고, 영유아는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장터(바자회) 활동	바자회를 통해 물건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합리적으로 나누는 과정을 경험한다. 부모들이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집에 와서 유아들이 파는 물건을 구매한다.
 견학 도우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견학 활동이나 나들이 활동에 부모가 참여함으로써 실제 영유아들이 실시하는 원외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교통안전 도우미	어린이집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등·하원 차량이나 어린이집 근처 건널목에서 부모가 안전요원의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주변을 정비하거나 놀잇감을 세척하는 등 부모가 노동력을 기부하는 활동을 한다.
 직업 소개 및 체험	부모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모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영유아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책 읽어주기	부모들에게 영유아에 적합한 그림책 선정하는 기준과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영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가 책 읽는 것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한다.
 일일교사	어린이집 일과 중에 부모가 교사의 역할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반 운영 전반과 놀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공동양육자의 관계에서 부모가 교사의 관점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다.

*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5).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2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 지원

가.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개선 지원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니어미스(Near Miss) 수준에서의 예방관리가 일상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바람직한 상호작용 대안을 안내함으로써 보호자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훈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에서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

무시

“또그만게 뭘 안다 그래.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마.”

“(아이가 요구하는 일을 거절하며) 그건 네가 결정 할 일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해줄 때 해.”

거짓협박

“너 자주 이렇게 말 안 듣고, 울음 안 멈추면 벽보고 서있게 할거야!”

“(밥 안먹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 골고루 다 먹어야 TV 보여 줄거야!”

비난, 조롱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거야. ○○가 자꾸 오줌 싸니까 엄마 힘들잖아.”

“엄마, 아빠 빨리 회사 가야 해. 너 때문에 회사도,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양말 신으라니까, 왜 안 신고 돌아다니는거야!”

“신발 제대로 신으랬지! 너 거꾸로 신고 다니다 넘어질 줄 알았어.”

차별

“동생도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데, ○○이는 왜 혼자 정리 못 하는 거야.”

“너가 형이니까, 동생한테 장난감 양보하는 거야.”



-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관련 자료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보호자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훈육 행동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 첫째, 보호자가 영유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본 매뉴얼의 2장 활용). 영유아는 할 수 있는데도 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보호자에게 반항하기 위해 일부러 안 하는 것(won't)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라서 혹은 스스로 하기 어려워해서 할 수 없는 것(can't)임을 강조하여 안내한다.



- 둘째, 영유아 지도 시 보호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원칙에 대해 안내한다.

영유아 지도 시 보호자가 갖춰야 할 태도 및 원칙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돼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해 보세요	보호자가 정해진 규칙보다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지키고자 노력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훈육할 때 “경찰아저씨가 혼내줄 거야!” 등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면 훈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작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하세요	아이들은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이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 꾸짖을 경우 왜 지금 야단을 맞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훈육은 되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오늘은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반경에 혼란을 느낄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하지 마세요	체벌 전 올바른 훈육을 위한 진정한 목적을 떠올려 보세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꾸짖지 마세요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제지하지 말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타인이 보는 앞에서 꾸짖지 마세요	아이의 잘못을 타인 앞에서 꾸짖으면 아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반발 심리만 강해질 수 있어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이가 공포를 느끼게 되면 상처만 남게 돼요.
과거의 잘못은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이 부족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훈육방법.

나. 상담을 통한 훈육 지원

- 모든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보호자 상담 전, 사전 상담지를 통해 보호자가 보는 아이의 발달상태, 가정에서의 생활습관, 보호자의 양육태도, 양육 시 어려운 점 등을 미리 파악한다.
- 부적절한 훈육은 보호자가 영유아에 대한 이해도와 양육 역량이 낮을 때 발생한다. 보육교직원은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가 영유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영유아에게 적절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보육교직원의 조언이 보호자의 양육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태도로 상담에 임한다.
- 보호자 상담 시 주요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상담 자료는 보관한다.



알림장, 상담내용, 보육활동 등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요!

- 교사는 영유아 관찰내용, 영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보호자와 소통한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자와 신뢰 관계를 맺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사 시 교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자료가 되기도 한다.
- 알림장, 상담자료, 보육일지 등 교사의 기록 자료는 보호자에 의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평소 얼마나 책임감 있게 보육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주요 증거자료가 된다. 교사가 보육활동, 보호자와의 소통 일상적 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지원

-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때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 보호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 및 자료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호자를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고자료 및 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go.kr)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인쇄물, 동영상, 소식지, 포스터, 뉴스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함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ps/main.do>)

- 부모교육 매뉴얼, 동영상 등 제공
- 자녀연령별 육아정보 제공



라.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위한 지원

- 어린이집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를 안내하여 보호자와 영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 공통 부모교육 - 클로버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체험활동,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가정 내 놀이 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 자녀 권리존중,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발달 이해 -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 • 부모 상담 • 양육서비스 - 장난감, 도서대여서비스, 놀이실 운영, 육아정보제공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교육 - 가족구성원 역량 향상 교육,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한 양육방법 등 • 가족상담 - 부부 상담, 보호자 자녀 상담 등 • 가족돌봄나눔 - 가족 단위 봉사활동 • 다양한 가족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아이돌봄지원사업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II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5장. 아동학대의 발견

6장. 아동학대 신고와 영유아 보호



Note

- » 영유아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성인들에게 보호받으며 성장, 발달해가는 존재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가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만약 학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를 발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에 노출되었거나 피해 위험이 있는 위기 영유아가 가지는 고유의 문제와 요구를 사려 깊게 파악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장

아동학대의 발견

II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한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원영이 아동학대 사건과 미국의 데이브 펠처(Dave Pelzer) 아동학대 사건
두 사건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부조**에 의해 일어난 학대입니다.

하지만 원영이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라졌고, 데이브 펠처는 12살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의 관심으로 비참한 삶에서 **탈출**한 뒤, 아동학대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변의 끈질긴 **관심**이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실화(우리 곁의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홍보동영상
리스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 교육·평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홍보자료 → 동영상에는
70여 개의 아동학대 예방 홍보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보호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 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해당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보호자에 해당됨
-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카목
 - 아동복지법상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파목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하목
-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포함됨

2

아동학대의 유형

가.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신체학대의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핍박하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 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

나.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정서학대의 예

- 언어 폭력행위
 -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적 위협
 - 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쫓아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
 - 돈을 벌어들여야 위협, 아동의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다. 성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성학대의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드라이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기삽입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라.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방임의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위험과 상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 방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짐 등
- 교육적 방임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지도하지 않는 등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시설근처에 버리고 감,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친족 거주지 근처에 아동을 두고 사라지는 등의 행위 등

3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가. 형법상 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 카목)

구분	죄명	내용	조항
가	상해 (미수)	신체를 상해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미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제258조의 2 제1항·제3항 (제257조 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¹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제261조
	폭행치상	폭행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제262조
나	유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	제271조 제1항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	제272조
	학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	제273조 제1항
	아동학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	제274조
	유기치상	유기, 영아유기 또는 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제275조
다	체포 감금 (미수)	사람을 체포(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또는 감금(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	제276조 제1항· 제280조
	중체포 감금 (미수)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	제277조 제1항· 제280조
	특수체포 감금 (미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 감금죄, 중체포 감금죄를 범한 때	제278조·제280조
	체포·감금치상	체포 감금죄, 중체포 감금죄, 특수체포 감금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제281조
라	협박 (미수)	사람을 협박(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 ※ 반의사불벌죄(제283조 제3항)	제283조 제1항· 제286조
	특수협박 (미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	제284조·제286조

구분	죄명	내용	조항
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또는 유인(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	제288조 제1항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	제288조 제2항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	제288조 제3항
	인신매매	사람을 매매	제289조 제1항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	제289조 제2항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	제289조 제3항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	제289조 제4항
바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차상	미성년자약취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강간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제297조·제300조
	유사강간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제297조의2· 제300조
	강제추행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제298조·제300조
	준강간 강제추행 (미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제299조·제300조
	강간등 상해 차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제301조
	강간등 살인 차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제302조

구분	죄명	내용	조항
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제303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	제303조 제2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제305조
사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 반의사불벌죄(제312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 ※ 친고죄(제312조 제1항) ¹¹⁾	제311조
아	주거 신체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제321조
자	강요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제324조·제324조의5
차	공갈 (미수)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제350조·제352조
	특수공갈 (미수)	단체 또는 다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	제350조의2·제352조
카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	제366조

10) '반의사불벌죄'란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함. 공소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형소법 제327조 제6호).

11)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함.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후에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형소법 제327조 제5호). 정부의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의 방침에 따라 성폭력 관련 법률들의 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 모든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에서 삭제됨.

나. 아동복지법상 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구분	죄명	조항
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1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6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8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9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중 제10호, 제11호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참조)

다.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파목)

구분	내용
파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타목까지의 죄로서 「형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하목)

구분	죄명	내용	조항
하	아동학대살해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제4조①
	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제4조②
	아동학대중상해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제5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	제6조



잠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보호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에게 사망, 중상해 등과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형법」에 비하여 형을 가중함

-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상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가 적용되어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였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이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그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함
- 또한 「형법」 상 살인죄(제250조제1항)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이 보다 중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됨

4

아동학대의 징후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는 다음과 같다.

신체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손발이 차거나 붉게 부어오른 상태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화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 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특정물건을 계속 밟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①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②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③ 항문 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④ 구강 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① 성적(性的)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②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방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 출처: 보건복지부·경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6장

아동학대의 신고와 영유아 보호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준수사항

가. 신고의무자의 역할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나.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폭력·방임·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시급한 경우
-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결석한 아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 매일 확인해야 하는 내용
 - 아동이 어린이집을 결석하는 경우, 부모는 보육교사에게 유선이나 스마트 알림장 등 대화방법을 통해 어린이집에 알려야 한다. 교사는 아동 결석 당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결석사유를 확인한다.
- 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 2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
 - 가정방문 시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방문한다.
※ 가정방문 해야 하는 경우, 각 지역 주민센터(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한다.
 -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을 할 때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경우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¹²⁾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참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직장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

가. 아동학대 관련 상담방법

-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 또는 인지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절차문의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여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 중 학대 의심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 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현장출동이 진행될 수 있다.

나. 아동학대 신고방법



어디로
신고하나요?

- 국번 없이 112에 신고(신고일원화)
-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어떤 내용을
신고하나요?

1.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피해(의심)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피해(의심)아동의 심신상태 등
 2. 피해(의심)아동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아동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피해(의심)아동과의 관계, 피해(의심)아동과의 동거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4. 신고자 관련사항: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피해(의심)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5. 아동학대 의심상황: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6. 기타사항: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 여부, 기타 내용
- ※ 위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신고 예시

• 112 전화신고 예시

-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에 대해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연락드립니다.
- ※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
- 아동의 현재 상황은 ()입니다.
-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
- 아동의 인적사항은 ()입니다.
-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학대행위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입니다.
-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등.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입니다.
-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 ※ 익명으로 신고 가능

• 112 문자신고 예시

1. 학대피해 의심 아동 정보(추정)
 - 1) 이름 :
 - 2) 성별 :
 - 3) 연령 :
 - 4) 주소(학대발견지 혹은 실거주지) :
2. 학대피해 의심 아동 정보(추정)
3. 학대 의심내용
4. 기타사항



신고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신고자의 신분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 (관련법: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누구든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됨)
 - 신분관리카드의 열람 가능
 - 증인신문 시 영상물 촬영 제출 가능
 - 신변 안전 요청 가능
 -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출처: 보건복지부·경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다.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를 확인한다.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처나 징후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질문하여 설명을 들어본다.
- 아동학대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하지 않는다.
- 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피해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한다.
 - 피해아동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아동에게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신고한다.
- 신고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본인도 주의한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2항).
 - 아동학대(의심)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독단적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대응 창구를 원장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수사에 협조한다.
 - 영유아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한다.
 -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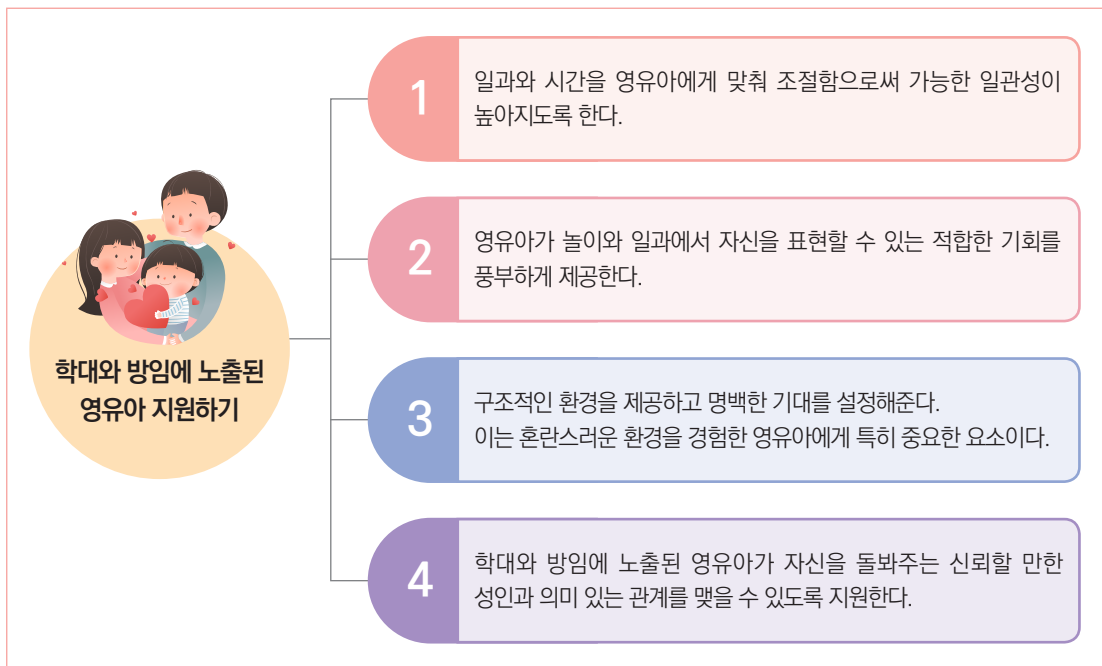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 지원

가.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특성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징후는 학대나 방임의 특성, 발생 시기, 지속기간, 강도, 영유아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 어떤 영유아는 분명하고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영유아는 미세한 행동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학대나 방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학대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징후들은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나 가족이 지원이나 중재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
 - 발달지연 : 영유아기에 일관되고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면 동작, 언어, 사회, 인지 발달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 섭식행동문제 :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음식을 감추거나 모으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진정행동 : 어떤 영유아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굶거나, 상처를 내는 등의 평범하지 않은 진정행동을 보인다.
 - 정서문제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고, 대개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다. 이 외 어떤 영유아는 성인에게 매우 빨리 애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안전에 대한 영유아의 기본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부적절한 모델링 행동 : 학대하는 성인을 모방한 행동,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 행동을 나타낸다. 영유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 공격성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학대나 방임의 결과, 이들 영유아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우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낼 수 있는 행동 징후를 이해하고, 학대신고 전·후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가족을 지원하는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보호자가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보육일과에서의 지원

-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학대위험에 노출되는 영유아에게 일종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들 영유아에게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발달적으로 적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위기 영유아가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고쳐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서는 위기 영유아가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징후, 발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과 경험을 통해 영유아가 세상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회복탄력성이 있으며, 특히 일부 영유아는 학대와 방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학대경험과 관련된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해낼 역량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같이 지원적인 성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 학대에 노출되었거나 노출위험이 있거나, 학대가 있지는 않아도 가정폭력 등과 같은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보육교직원이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를 잘 돌봐주기** : 영유아를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 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안아주고, 달래줄 필요가 있다. 학대경험이 있는 영유아 대부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은 아픔, 고통, 다른 형태의 학대와 관련이 있었다. 영유아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지는 것이 늘 불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정서 연령에 따라 영유아를 돌봐주기** :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연되어 있기 쉽다. 영유아는 공포를 느끼거나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다. 보육교직원은 이러한 영유아를 그들의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정서적 연령과 요구에 맞게 이해하고 돌봐줄 필요가 있다.
 - **영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하기** : 보육교직원은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에게 부드럽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영유아는 교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 **영유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신체적인 학대를 경험한 영유아가 또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방임에 노출된 영유아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따로 숨겨 놓을 경우 이 행동이 음식이 박탈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막을 경우 이는 영유아의 안전감을 위협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보육교사 자신을 돌보기** :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가외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보육교직원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다면, 이들 영유아의 요구에 일관적이고 예측성 있으며, 풍부하고 지원적인 돌봄을 해주기 어렵다. 보육교직원도 휴식을 취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III

민원 및 신고 시 대응

7장. 부주의한 지도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8장.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경우

9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분석



Note

-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를 하여도 간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의심, 민원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 어린이집 원장은 민원이나 신고 상황을 다룰 때 무엇보다 해당 영유아와 다른 영유아 모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딜레마 상황에서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어린이집에서는 부주의한 지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및 동료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육교직원을 공정하게 대하고, 이들의 민원이나 호소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야 한다.
- » 어린이집 원장은 민원 제기나 학대 신고와 관련된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이 각자 자신의 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장

부주의한 지도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동료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혹여 사안이 학대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이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의 민원발생



보육교직원에 대한 내부 문제제기



1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 사례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가능한 속히 보호자를 직접 만나 보호자가 제기하는 문제 상황, 보호자의 요구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
 - 보호자가 제시한 문제 내용, 상담 중 보호자에게 말한 내용 등을 기록해 둔다. 보호자에게 향후 이 민원에 대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안내한다.
 -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4.14. 개정)에 제시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 보호자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관련 문제는 없었는지 먼저 확인함으로써 학부모를 안심시킨다.
 - 어린이집 원장은 면담 및 논의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되었거나 처음 판단이 바뀌게 될 경우 이를 즉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함께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어린이집에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시키거나 노력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보육행동을 수정하여 영유아 지도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의 내용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이를 기초로 해당 보육교직원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하고 논의하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이 적합하게 바뀌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가 보육일과의 특정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여, 원인과 결과가 수정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지침,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 방식을 검토,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집 전체에서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보육교직원들이 긍정적이고 발달에 적합한 보육행동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Q.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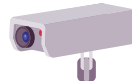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 마스크 처리 등)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5헌마994, 20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부록).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CCTV 상담
관련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 1670-2082(이용빨리) → 2번



2

다른 보육교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부주의한 지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간과하지 말고 즉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동료 보육교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행위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문제 제기가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낸 행동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는 한, 전체 보육교직원과 논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장은 의심을 받게 된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내용이 다른 동료들에게 전달되어 그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어린이집 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
 - 보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하겠다는 점, 해당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의 신원도 보호할 것임을 명백히 안내하고, 보고한 보육교직원에게도 함구하도록 요구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영유아에게도 질문을 하거나 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부주의한 지도를 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보육교직원을 면담하여 상황에 대해 묻고 필요 시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의 설명과 자기변호를 듣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원이 서로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 행위에 반복성, 고의성, 은밀성이 있지 않은지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 면담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보육교직원에게 이를 지적하고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도록 명확히 요구한다.
 - 면담 후 해당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지도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8장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경우

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처리과정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나 다른 보육교직원 등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영유아의 친권자로서 신고하는 행위는 고소, 제3자가 신고하는 행위는 고발에 해당되며, 「집단생활 중 발생한 아동학대」의 사례로 다루어진다.
- 집단생활 중 발생한 아동학대란, 집단생활 중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말한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잠깐! 아동학대 판단 시 고려사항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고의’의 정의

- 범죄를 실현한다는 인식과 의욕
- 미필적 고의도 고의에 해당됨
 - 미필적 고의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심리상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된 사건의 처리과정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신고접수
 - 시·군·구 긴급전화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을 수 있다.
 -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중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한 즉시 112에 통보한다.
- 현장출동
 - 필요 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해(의심)아동을 대면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때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동행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학대 피해(의심)아동 분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합동조사
 - 신고, 발견 내용을 경찰 및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한다.
 - 어린이집의 현황을 해당시설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파악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최초 신고접수 된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합동조사 실시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초 신고 접수된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중 추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피해(의심)아동 또는 아동학대 행위(의심)자가 발견 되었을 경우, 추가 신고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사례판단
 - 조사 내용 및 취합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현장판단,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필요 시 의학·보육분야 등 전문가로부터 학대판단 근거를 확보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 아동학대 판단결과는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알리고 추후 개입 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 조사완료 및 사례판단 진행 후 자자체 해당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부서에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 경찰의 사건처리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조치 등에 대해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 사례연계
 -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연계하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 진행상황 파악 및 점검한다.
- 사례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관리 종결회의를 통해 사례개입 결과 및 종결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 조사 업무 수행
- 사례관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연계된 사례에 대해 초기면접 및 사정을 실시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한다.
 -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례관리 목표와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계획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참석하는 사례종결 평가회의를 통해 종결 여부를 논의, 결정한다.

다. 경찰

• 수사

- 112 전화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는다. 112 신고전화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긴급전화이므로, 아동학대 관련 상담 전화의 경우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안내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이외에 인지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 필요 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피해(의심)아동을 대면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학대 피해(의심)아동 분리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다.
- CCTV 등 관련 자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수사를 한다.
- 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령 등 영유아의 개별특성을 고려한다.
-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의 사건처리

- 송치

라. 검찰

• 수사

-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사안을 처리한다.

검찰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처분(형사법원)
- 아동보호사건 송치(가정법원)
- 기소유예처분(아동학대 관련기관에서의 상담, 교육 조건)
- 불기소처분

마. 법원

• 재판

-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
- 형사법원에서는 형사판결이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형사법원

- 실형(징역, 벌금 등)
- 집행유예
- 보안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가정법원

-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 감호위탁
- 치료위탁
- 상담위탁



아동보호사건이란

-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함
- 경찰이 검찰로 사건 송치 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 아동보호재판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검사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송치에 의하여 심리가 개시되며,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됨
-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361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각 호의 처분은 병과 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경우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음

바. 유관행정청의 행정처분

• 행정처분

-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의 보육담당 부서에서는 CCTV 영상, 가해자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판정 결과와 별도로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청(보육담당 부서)은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통상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행정청의 행정처분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운영정지 혹은 시설폐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5년 이내의 자격정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원장),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교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취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위반시설*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위반 사실의 공표’를 한다.

* 위반시설 : 어린이집명, 대표자명, 원장명,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

** 위반행위자 : 본인 이름, 법 위반 이력,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의 내용

2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수사 개시된 사건에 대해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학대신고 조사절차에 협조하도록 권유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시 해당 행위뿐 아니라 행위 발생 전후의 맥락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은 이를 위해 CCTV 열람, 보육교직원들의 구두 진술, 어린이집의 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조사하게 된다.
 -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영유아의 행동지도를 위해 원장과 교사(들)이 의논한 내용, 영유아를 위해 실천한 구체적 내용, 영유아의 행동지도에 대해 보호자와 일상적으로 소통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유아, 보호자,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모든 보육교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어린이집의 지침을 유념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언론이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행동이 해당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주고, 근거없는 소문을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의심)에 대해 고소한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합동조사 실시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의논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보호자들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건 조사 공무원이 해당 사건에 다른 영유아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요청할 수도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의 조사에 협조하고, 이들이 요청하는 자료 및 관련 서류를 신속히 보여주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이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동석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더라도 원장은 전문적인 조사훈련을 받은 공식 조사자가 아니라는 점, 원장이나 어린이집 내 다른 보육교직원의 관여가 자칫 조사 업무를 방해하여 원장 및 다른 보육교직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가령,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의 법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른 보육교직원이 혹여 신고당한 사항에 대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원장이나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이 동료 보육교직원에게 관련 자료나 증언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언론의 정보요청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다른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언론의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필요 시, 언론 대응 과정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건 조사 공무원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원장은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이 사건 조사 공무원 외의 인물(언론 등)과 접촉한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련 지침에 따르거나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아동학대임이 명백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어린이집에서는 즉시 해당 보육교직원이 사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가 유보적이라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이익, 보호자와 다른 보육교직원들의 상황, 향후 이런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보육교직원의 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 **만약 해당 보육교직원의 혐의가 벗겨진다면**, 어린이집 원장은 당사자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 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학대혐의를 받는 보육교직원의 바람직한 대응 태도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연루된 보육교직원은 미리 그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 공무원 등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 해당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사안에 대해 설명한 내용, 사안과 관련이 있는 영유아, 보호자, 다른 보육교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관련된 정보 기록, 목격자 리스트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 가령, '이전에 보호자와 영유아 지도 방식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는가? 보호자는 영유아가 받는 보육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보육교직원은 필요 시 해당 사안에 관련이 있는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되,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나 진술할 내용에 대해 변경, 삭제, 추가 등의 압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이나 사건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내용은 사본 1부를 자신이 보관하고, 사건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내용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사본을 제출한다.
- 본인의 고용상태와 직무 조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지침에 따라 (무급) 휴가를 가야 할 경우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4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다.
 - 행정처분 시,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청구

9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분석

1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처벌

-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아동복지법 제74조).
- 아동학대 의심행위의 사법적 판단은 아래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¹³⁾의 정도
 -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과 경위
 -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 상태
 -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13) 유형력이란 '육체적 정신적 물리력의 행사'를 말함.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인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신체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함(예: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밀치고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고성으로 폭언을 하는 행위 등).

2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판례

가. 무시나 방치가 아동학대로 이어진 경우

- 분리불안으로 울며 안아달라는데 밀침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해아동(1세)이 어린이집에 이틀째 등원한 날 엄마가 교실 밖을 나가자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달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아달라고 하는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고 반대방향으로 돌려 아동이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311).

- 밥을 늦게 먹는다고 혼자 40분간 방치함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피해아동은 여아로 21개월이었다.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수차례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손가락을 깊숙이 밀어 넣었고, 피해아동이 울자 아동의 손을 잡아끌고 밥 먹는 곳에서 떨어져 혼자 앉아 있게 하였다. 다른 아동과 보육교사가 같은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아동은 약 40분 동안 혼자 있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130).

- 설명 없이 타임아웃으로 고립시켜 방치함

피고인은 어린이집 ○○반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생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들어 올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반성하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혼자 화장실에 남겨둔 채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약 10분 간 감금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803).

나. 비난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 폭언, 욕설 등을 하며 비난함

자폐아동인 피해자 아동이 소변 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에서도 이러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냐, 네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1861).

-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아동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아동의 몸을 밀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269).

다. 조롱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 훈육한다면서 다른 유아들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킴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평소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피해아동(6세)을 훈육하겠다고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갑자기 아동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려 다른 원생 앞에서 아동의 알몸을 노출시켰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736).

- 용변 실수를 한 아동을 다른 유아들 앞에서 갈아입힘

피해아동이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아동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바지를 갈아입힐 수 있었음에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 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교사와 언쟁을 벌이면서 피해아동의 젖은 하의와 팬티를 정리하다가,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의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닦았다(부산지방법원 2019노2446).

라. 거짓 협박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 과제를 완성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글쓰기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1103).

마. 차별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 보행이 어려운 장애유아를 계단에 20분간 방치함

피고인은 어린이집 내에서 피고인이 돌보던 뇌병변 1급 장애아동인 피해자 (7세)를 1층에서 2층까지 데리고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계단을 오를 수 없는 피해자가 2층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혼자 기어 올라와라”고 한 뒤 피해자를 계단 아래에 방치하고 2층 교실로 들어간 채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861).

-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식사와 간식을 혼자 먹도록 한 행위

어린이집에서 매일 제공하는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같이 먹도록 하지 않고 6월 중 25회, 7월 중 15회 상당을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과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8노484).

바. 거친 접촉이 학대 행위로 이어진 경우

- 낮잠 시 강제로 재우는 경우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피해아동의 얼굴에 낮잠 이불을 덮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9노272).

- 식사 시 밥을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입술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수 회 두드리거나 이마를 두드렸다(대법원 20196365).

- 아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빨기 견게 하여 미끄러져 넘어지게 한 경우

현장학습 시 피해아동의 머리핀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아동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을 실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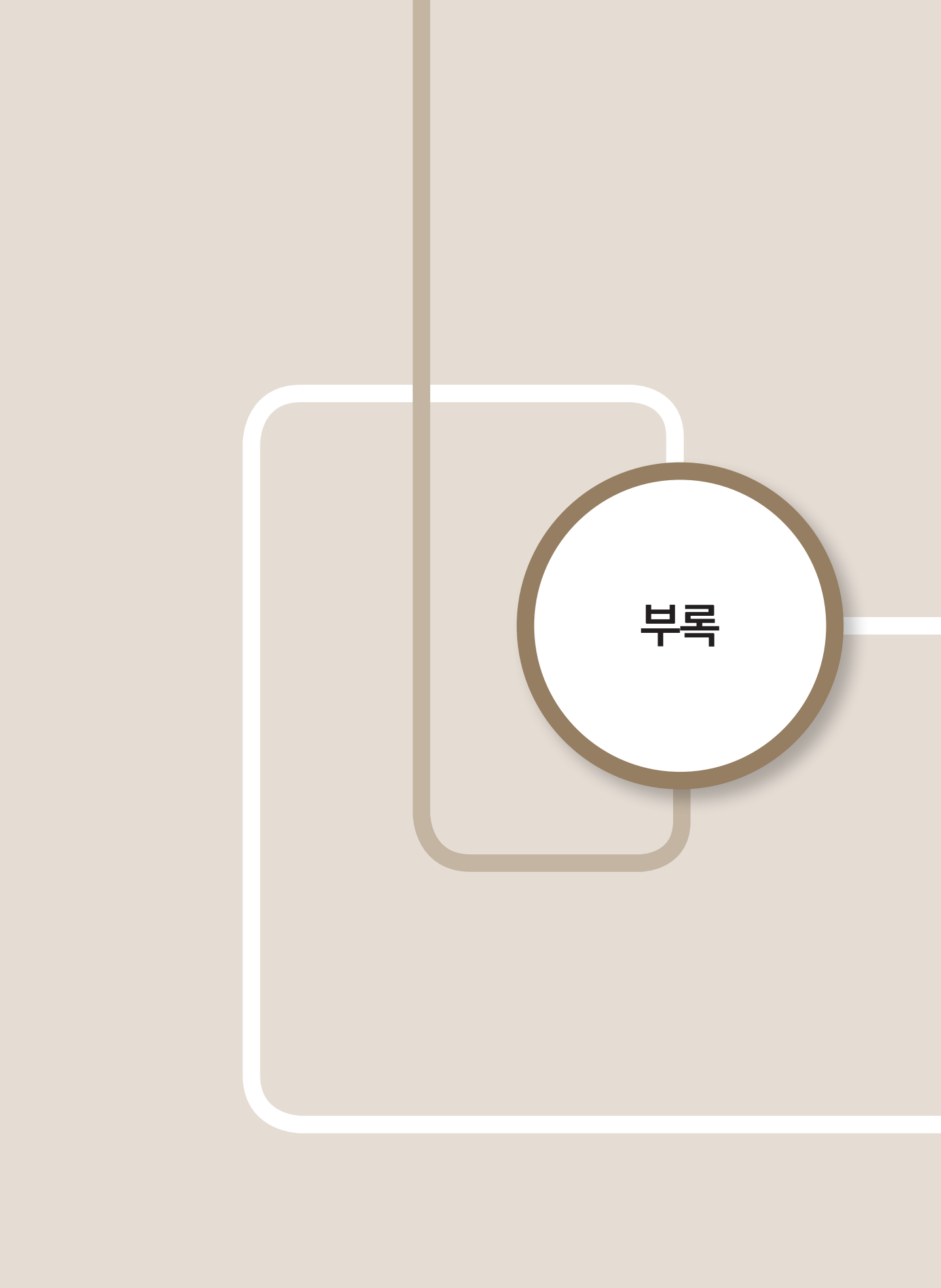
- 운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경우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들어 구석에 있는 쿠션 의자에 앉힌 다음 약 10분 간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혼을 내었고, 식사 시간에 엎드려 울고 있자 식판을 탁자에 던지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약 10분간 붙잡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884).

-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볼을 꼬집거나 때려 빨갛게 달아오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아동 A(2세)는 해당 어린이집 원아이다. 피고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어 빨갛게 달아오르게 한 후 피해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아동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아동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하였다. 피해아동 B는 해당 어린이집 원아로 2세 남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간식 시간에 피해아동 B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귀부터 볼까지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게 때렸다(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10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부록

1

2장 관련 부록

[부록 2-1]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

보육 중에 아래의 부주의한 지도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무시	1.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들은 척 함 (예: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0	1	2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예: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우는데 선생님을 부를 때까지 돕지 않음)	0	1	2
	3.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예: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0	1	2
비난	4.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예: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0	1	2
	5.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예: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까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0	1	2
	6.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예: “이거 누가 흘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0	1	2
조롱	7.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예: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다!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0	1	2
	8.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예: “친구들은 혼자 잘 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0	1	2
	9.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예: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0	1	2
거짓 협박	1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예: “놀잇감 가지고 한번 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0	1	2
	11.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예: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0	1	2
	12.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결을 예고함 (예: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0	1	2
차별	13.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예: “선생님! 애 좀 달래 봐요! 애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0	1	2
	14.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예: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찰래? 기저귀찬 친구는 별로야.”)	0	1	2
	15.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예: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0	1	2
거친 접촉	16.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예: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0	1	2
	17.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함 (예: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발로 밟아 밀며 이동시킴)	0	1	2
	18.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예: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확 잡음)	0	1	2

[부록 2-2] 각 연령별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과 대처 방안

연령 (교사:아동)	특징	대처	유의 사항
만 0세 (1:3)	불편함/불쾌함/불만족감을 짖얼거림, 얼굴표정, 울음으로 표현	영아의 신호에 신속하고 민감 하며 친절한 반응	생리적 욕구의 이해
	잦은 수면/쿠잉 웅얼이/ 한 단어 문장 말하기 기질(순한/까다로운/겁많은)	울음/손짓/접촉/웅얼이에 대해 눈맞춤/응답	기질존중을 통한 상호성 이해
	특정대상(주양육자)과의 친밀함 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불안감	공포/불안감 수용 애착형성을 위한 면밀한 관찰과 민감한 상호작용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애착형성의 과정으로 이해
만 1세 (1:5)	이동성/활동성 강화 통한 자율성 발달 근육과 오감을 토대로 환경 탐색 경험	오감 및 근육 발달 증진을 위한 놀잇감을 충분히 제공	탐색적 욕구 이해
	입으로 주변 사물 탐색, 이가 나기 시작, 타인을 물기도 함	치아 발달기나 깨물어도 다치지 않을 위생적이고 부드러운 놀잇감 제공 무는 흥내 및 행동 자제	영아가 물 수 있음을 인지
	젖은 기저귀/배고픔/아픔/ 관심 등을 이유로 울면서 의사를 표현	울음의 원인을 최선으로 파악 하여 욕구 해결 노력	울음이 영아의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임을 인지
	낯가림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분리불안을 보이며 놀이 참가 거부/비적응	지속적인 울음/비적응을 발달 특성으로 인정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기	낯가림과 분리불안 완화하고 애착관계 형성 노력
만 2세 (1:7)	강한 자기주장/고집스러움/ 잦은 기분변화/변덕스러움/ 격렬한 정서표현 욕구 좌절에 분노 감정 표출하며 심한 고집을 부리거나 떼를 씀	떼쓰기 등의 감정 무시 및 억압 보다는 마음을 읽어주고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하기	긍정적 자아인식과 자율성 형성 시기임을 인지
	나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자기 중심적임 내 것과 친구의 것을 구별하나 소유개념이 발달하지 않아서 공유하기를 강요할 시 더욱 고집스러워짐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	많은 수의 놀잇감을 제공하여 자기 소유권을 충족 모두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소유하기 위해 기다려야 함을 인지시키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행위임을 인지

연령 (교사:아동)	특징	대처	유의 사항
만 3세 (1:15)	스스로 식사하기/옷입기/ 대소변 가리기 등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율성 발달 성인의 간섭에 반항하기도 함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	자기주장과 경쟁 통해 긍정적 자신감과 주도성을 형성하는 시기임을 인지
	자기중심으로 상상력이 풍부함 현실과 상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바람을 강하게 표현함	말이나 행동에 대해 도덕적 판단 하기 보다는 내면을 이해하기	규범을 알게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해나가는 시기임을 인지
만 4세 (1:20)	타인의 감정 지각하고 이해하기 시작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공감의 장 마련	공감능력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절능력 향상되는 시기임을 인지
	좌절 혹은 만족지연에 대한 보상 인지	충동절제나 인내를 통해 일을 해내면 자긍심이 격려	
	약속 및 규칙을 이해하며 도덕성 발달 수치심, 죄의식 느끼며 거짓말 등의 방어기제를 나타냄	약속과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시 비난보다는 다음에 더 잘하도록 격려	약속 및 규칙에 대한 도덕성 및 친사회적 기술이 발달되는 시기 임을 인지
	나누고 도와주는 행동, 협동놀이/ 감정이입 등을 통해 친사회적 기술 형성 놀이 친구로 수용되어 함께 어울림	칭찬/격려/반복 학습 놀이의 욕구 파악하여 원하는 놀이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참여하도록 장려	놀이 과정 및 행동 특징 이해
만 5세 (1:20)	성기/성역할에 대한 관심 및 행동 증가	성에 대한 죄책감 형성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질책 자제	성기와 성역할 등의 성적 관심을 수용 및 이해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강화/제어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	우정에 대한 욕구 강화 이해
	소속감과 영향력 확인을 위해 고의적인 방해(공격성) 행동을 하기도 함 언어(욕하기, 심하게 놀리기, 고자질하기 등)/ 신체(때리기, 물건 빼앗기 등)	갈등 해결을 위해 협상이나 분배 방식 등 대안적 행동 제시 억압된 정서를 풀 수 있는 동적인 활동 제공	소속감과 집단 정체감 형성 시기임을 인지

*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18). 영유아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매뉴얼.

[부록 2-3] 발달이 늦은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제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문제의 정의와 우선순위의 결정	- 문제행동의 확인 - 우선순위의 결정		
	우선순위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예
	1	파괴	아동이나 주위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으로 최우선 순위에 속함 (물기, 때리기, 눈 찌르기, 머리 흔들기, 긁기 등)
	2	방해	집, 교육기관,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참여를 방해하고,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등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말 안하기, 울기, 남을 밀어제치기 같은 행동도 포함)
2단계 정보수집	3	분산	귀찮은 행동이지만 해가되지 않는 행동 (공공장소에서 손을 계속 흔들기, 반향어 하기, 몸 흔들기, 책 찢기 등) 중재 계획은 하지 않으나 대체행동으로 지도
	-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이해 필요 : 정보 모으기 - 행동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 : A-B-C 분석		
	선행사건(A)	문제행동(B)	후속결과(C)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 끼리 모여서 웃으면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 철수는 함께 하는 친구가 없이 혼자 돌아다닌다.	철수는 재미있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공기를 빼앗는다.	친구들이 공기놀이를 멈추고 “저리가”하고 말하면서 철수 손에 있는 공기를 빼앗고 “우리 다른 데 가서 하자”하면서 다른 장소로 가버린다.
3단계 가설 세우기	가정에서의 정보 수집		
	- 가설 : 관찰된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 사이의 관계를 밝혀줌 - 가설을 위한 질문 - 왜 아동이 이 행동을 지속하는가? - 어떤 선행사건이 문제행동을 일어나게 하며, 어떤 선행사건이 문제행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 - 문제행동이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 행동 후에 어떤 후속결과가 일어나는가? - 문제행동이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의 끌기, 회피하기, 사물을 얻기, 자기규제하기, 감각자극 놀이기 등)		

단계	주요 내용			
4단계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의 실행	-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선행하건 중재 - 사람의 변화주기(교사, 그룹 변화) - 활동의 변화주기 - 대체행동 지도			
	가능	목적	문제행동의 예	대체 행동
	관심끌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원함	놀이하고 있는 또래들 사이에 가서 놀잇감 던지기 교사가 옆에 있는 친구와 놀이하고 있는데 일부러 친구를 발로 차기	친구 이름 부르기, “같이 놀자”라고 친구에게 말하기 선생님 이름 부르기, 선생님 손잡기
	회피	특정과제나 상호작용을 피하려 할 때	정리 시간에 정리하자는 친구 손 물기, 낮잠 시간에 자기 싫어서 울기	정리 시간 미리 알려주기 조용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요구하기	음식이나 놀잇감을 원할 때 원하는 활동 시	좋아하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끝났을 때 더 하려고 책상 치기, 원하는 놀잇감을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자 또래가 놀던 놀잇감을 뺏아가기	손을 들고 요구하기 또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기 원하는 놀잇감 가리키기
	자극 추구	감각 인식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면서 계속 강한 자극 찾기	수시로 일과 도중에 손 빨기, 놀이 중 바지 앞섶에 손을 넣기	손 씻고 오기(물 마시기) 소근육 놀이 활동 참여하기
5단계 평가	-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 지원계획의 적절성 평가 - 계획 수정			

[부록 2-4] 정신 웰빙 상태 검사

※ 다음 질문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얼마나 그렇게 느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문항에 대해서 귀하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거나 느꼈는지 0-5 사이의 숫자에 체크하세요.

문항	전혀 없음	한번 혹은 두번	대략 1주에 한번	대략 1주에 2-3번	거의 매일	매일
1. 행복감을 느꼈다.	0	1	2	3	4	5
2. 삶에 흥미를 느꼈다.	0	1	2	3	4	5
3. 만족감을 느꼈다.	0	1	2	3	4	5
4. 나는 사회에 공헌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5. 공동체(사회 집단이나 이웃 같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6. 우리 사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7.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느꼈다.	0	1	2	3	4	5
8.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이해할만 하다고 느꼈다.	0	1	2	3	4	5
9. 나는 내 성격의 대부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0.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1.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2.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3. 나만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14.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0	1	2	3	4	5
※ 정서적 웰빙 요인에는 문항 1, 2, 3						
※ 사회적 웰빙 요인에는 문항 4, 5, 6, 7, 8						
※ 심리적 웰빙 요인에는 문항 9, 10, 11, 12, 13, 14						

* 출처: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2012). 정신적 웰빙 척도(MHC-SF) 한국어판.

[부록 2-5] 우울 척도 평가

※ 지난 일주일 동안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체크하세요.

- A. 극히 드물다(1일 이하) B. 가끔 있었다(1-2일간)
C. 종종 있었다(3-4일간) D. 대부분 그랬다(5일 이상)

내 용	A	B	C	D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0	1	2	3
2.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0	1	2	3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 같다.	0	1	2	3
4.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0	1	2	3
5. 비교적 잘 지냈다.	3	2	1	0
6. 상당히 우울했다.	0	1	2	3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0	1	2	3
8.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0	1	2	3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	1	2	3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3	2	1	0
11.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0	1	2	3
12. 두려움을 느꼈다.	0	1	2	3
13. 평소에 비해 말을 적게 했다(말수가 줄었다).	0	1	2	3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	1	2	3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3	2	1	0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0	1	2	3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0	1	2	3
18. 마음이 슬펐다.	0	1	2	3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0	1	2	3
20.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0	1	2	3

※ 1-20점 : 종종 우울감을 경험하나 정상범위입니다.

※ 21점 이상: 귀하는 우울증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 출처: 조명제·김계희(1993). 우울증 환자 예비평가(CES-D10).

2

3장 관련 부록

[부록 3-1] 아동학대 예방(금지) 서약서

아동학대 예방(금지) 서약서

1. 본인 ○○○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존중하며 영유아의 권리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영유아에 대한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영유아에 대한 폭언·고함·욕설·위협 등 정서학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영유아에게 부실급식 등에 대한 방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기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교육 및 제 활동에 솔선수범 하고,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어떠한 이유로든 영유아에게 체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어린이집 ○○○ (인)

* 출처: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아동학대 예방 마음나눔 프로그램 교육자료.

[부록 3-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 업무 셀프모니터링

※ 다음 각 항목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관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번호	내용	확인
1	영유아의 권리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2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보육과정, 특별활동, 견학, 행사 등)의 계획과 평가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반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회의를 통해 협력 및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
3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보육교직원의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 소통을 통해 영유아의 전반적인 상태(기분, 건강, 배변 등)와 가정 내 주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양육자에게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등 안정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자와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5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양육자의 보육실 참관(절차 및 방법, 안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

* 출처: 서울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자기체크리스트 中 일부 편집.

3

4장 관련 부록

[부록 4-1] 본 매뉴얼에서 사용된 ‘보호자’의 의미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의한 ‘보호자’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보호자’의 의미 안에 ‘보육교직원’이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본 매뉴얼에서 ‘보호자’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 I 부(아동학대의 예방)에서 ‘보호자’는 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II 부(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에서 ‘보호자’는 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III 부(민원 및 신고 시 대응)에서 ‘보호자’는 맥락에 따라 혼용되고 있습니다.
 - * 가령, 「보육사업안내」 부록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되어, 보육교직원 개인은 CCTV 열람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이와는 달리,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과정에서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되어, 보육교직원 개인은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6장 관련 부록

[부록 6-1]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울 때,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십시오.

구분	내용	체크란	
1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만한 질한,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10	성인의 성적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예	☐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예	☐ 아니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21년 8월 인쇄

2021년 9월 발행

발행인 한국보육진흥원장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전화 02-6901-0100 팩스 02-6901-0141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전화 02-2672-1535

ISBN 978-89-98842-59-8

※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